# 한·중 FTA 상세 설명자료

2014. 11

산업통상자원부

※ 본 설명자료는 가서명 이전인 2014년 11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한·중 양국의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내용이 일부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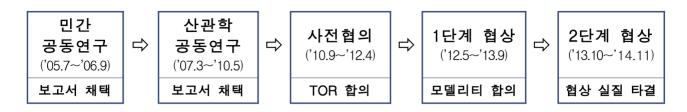
제1부 한·중 FTA 개요 ······· 1
1. 한·중 FTA 추진 경과 ······· 1
2. 한·중 FTA의 의의 3
3. 한·중 FTA 주요 내용 ······ 4
4. 향후 추진 계획 13
제2부 한·중 FTA 분야별 내용 15
1. 상 품 17
2. 원 산 지(규정, 절차, PSR) ······ 21
3. 통관 및 무역원활화 22
4. 무역구제 23
5. SPS (위생·검역) ······ 25
6. TBT (무역기술장벽) 26
7. 서 비 스 27
8. 금 융 29
9. 통 신 30
10. 자연인의 이동 31
11. 투 자 32

# 목 차

12. 지 재 권 33
13. 경 쟁 34
14. 투 명 성 35
15. 환 경 36
16. 전자상거래 38
17. 경제협력 39
18. 최초규정 및 정의40
19. 예 외 41
20. 분쟁해결 42
21. 제 도 43
22. 최종조항 44
제3부 참고자료 45
MIOT 640
1. 한·중 FTA 협상 차수별 주요 내용 47
2. 한·중 FTA 관련 각종 참고자료 ······ 55
3. 한·중 교역 주요통계 ······ 59
제4부 Q&A ······ 73

제1부 한·중 FTA 개요

## 1. 한·중 FTA 추진 경과



- □ (1단계) '12.5월 협상 개시 이후 '13.9월 모델리티 (협상지침) 협상 타결
  - \* 한·중 FTA는 민감성 보호를 위해 ①1단계 모델리티 협상에서 <u>민감성 보호</u> <u>방안 및 협정문 주요 요소 합의</u> 후, ②2단계 협정문 및 양허 협상을 진행

상품모델리티			타 모델리티
일반/민감 품목군	초민감품목군	서비스	GATS 플러스
품목수 90%, 수입액 85%	품목수 10%, 수입액 15%	투자	한중/한중일 투자협정 플러스
* 일반: 10년 이내 관세철폐 * 민감: 20년 이내 관세철폐	(양허제외, TRQ, 부분감축)	규범	지재권, 경쟁, 투명성 등

- □ (2단계) '13.11월부터 '14.11월까지 2단계 협정문 및 양허 협상
- □ (실질적 타결) '14.11.10일 APEC 각료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계기, 한·중 FTA 협상 실질적 타결 선언
  - < 한·중 FTA 관련 양국 정상(급)간 합의사항 >
  - ① 중국 국빈방문 계기 **한·중 정상회담** ('13.6월)시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 합의
  - ② 핵안보 정상회의 계기 **한·중 정상회담** ('14.3월)시, '**한·중 FTA 조기 타결'**에 대한 양국 정상간 공감대 확인
  - ③ 시진핑 주석 방한 계기 **한·중 정상회담** ('14.7월)시 '**한·중 FTA 연내 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에 합의
  - ④ ASEM 계기 **한·중 정상급회의**('14.10월)시 '**한·중 FTA 연내 타결 목표'** 재확인

# (참고) 한·중 FTA 주요 협상 경과

	구	분	주요 협상 내용
	1차	<b>'</b> 12.5.14	▪ 협상운영세칙(TOR : Terms of Reference) 확정
	1/1	(中 베이징)	▪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ng Committee) 설치
	2차	<b>'12.7.3~5</b>	■ 상품분야 품목군에 대한 정의와 기준에 대한 논의 개시
	2/1	(제주도)	• 서비스와 투자 분야 작업반 개최
	3차	′12.8.22~24 (中 웨이하이)	■ 상품을 민감도에 따라 일반·민감·초민감 품목군으로 구분
1단계	4차	'12.10.30~11.1 (경주)	▪비관세 장벽 및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논의 개시
협상	5차	'13.4.26~28 (中 하얼빈)	▪ 서비스·투자 모델리티의 핵심 요소에 대한 의견 교환
	※ 한	·중 정상회담(13	3.6월) "높은 수준의 포괄적 FTA" 추진 합의
	6차	'13.7.2~4 (부산)	• 상품 모델리티 및 협정 대상 및 범위 등에 대해 상당한 진전
	m -1	′13.9.3~5	■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 합의 → <b>1단계 협상 마무리</b>
	7차	(中 웨이팡)	-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자유화 수준에 합의 - 서비스/투자 및 규범 분야 협정문 구성 요소에 합의
	8차	'13.11.18~22	■ 상품은 양허 및 협정문 협상을 동시에 진행
		(인천)	• 원산지, 통관 등 여타 분야는 협정문안 협의
	9차	'14.1.6~10 (中 시안)	■ 상품분야 양허수준 및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협상 ★ (韓)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요구 vs. (中) 농수산 품목 개방확대 요구
	10차	'14.3.17~21 (일산)	■ 상품분야 양허수준 및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 협상 * (韓)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요구 vs. (中) 농수산 품목 개방확대 요구
	※ 한	· 중 정상회담(14.	3월) "한중 FTA 조기타결"에 대한 정상간 공감대 확인
2단계	11차	'14.5.26~30	■ 상품분야 2차 양허안(offer)을 교환하고, 양측 핵심 관심품목에 대해 2차 양허요구안(request) 교환
협상		(中 쓰촨성)	• 서비스 분야는 1차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
	※ 한	· 중 정상회담(14.	7월) "한중 FTA 연내타결을 위한 노력 강화"에 합의
	12차	'14.7.14~18 (대구)	• 서비스·투자분야 자유화 방식(韓 네거티브 vs. 中 포지티브)에 대한 원칙적 합의 도출
		, ,	* 중국이 양자 FTA에서 <b>네거티브 방식에 합의</b> 한 최초 사례
	13차	'14.9.22~26 (中 베이징)	▪ 상품분야 집중 협의를 진행하여 잠정 종합 패키지(안) 교환
	※ 한		[14.10월] "한중 FTA 연내타결 목표" 재확인
	14차	<i>'</i> 14.11.6 (中 베이징)	■ 6개 분야 잔여쟁점 집중 논의 <b>→ 2단계 협상 마무리</b>
	※ 한	· 중 정상 회담(1/	1.11월) "한중 FTA 실질타결 선언"

# 2. 한·중 FTA의 의의

### □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 마련

- o 한·중 FTA를 통해 급성장하는 중국 거대시장을 우리의 제2 내수 시장으로 선점하고, 경쟁국 대비 유리한 교역조건을 확보
  - 발효 즉시 중국으로 수출되는 연간 87억불 상당 물품의 관세가 철폐되며, 10년 내에 458억불 상당 대중 수출품의 관세가 철폐
    - ※ 한·중 FTA 자유화 달성시 연간 관세절감 예상액은 54.4억불(약 6조원)으로 한·미 FTA(9.3억불)의 5.8배, 한·EU FTA(13.8억불)의 3.9배
- o 국내 농수축산 분야를 충분히 보호하면서도, 향후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시장 진출 확대 가능성 확보
  - ※ 중국은 농산물 전체 품목의 91%, 수산물의 99%를 관세 철폐
- o 중국의 서비스 시장 개방을 통한 우리 기업 진출 기회를 확대
  - 또한, 한·중 FTA 활용을 위한 외국인 국내 투자 확대 기대

## □ 미래 한·중 경제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제도적 틀 마련

- o 현재 한·중 교역액은 연간 2천억불 이상, 우리의 對中 누적 투자는 6백억불을 상회하고 있으며, 2만개가 넘는 우리 기업과 50만명에 달하는 우리 교민이 중국에 체류중인 바,
  - 한·중 FTA라는 양국간의 제도적 틀을 통하여 양국 경제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기업과 국민의 권익 보호를 최대화

## □ 한·중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 o 한·중 FTA를 통한 양국간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는 양국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강화 및 한반도 평화 안정에도 기여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생산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 인정 등

### □ 글로벌 FTA 허브국가로서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 주도

o 미국, EU에 이어 세계 3대 경제권과의 FTA로 글로벌 FTA 허브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동북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 과정에서 핵심축(linchpin) 역할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

## 3. 한 중 FTA 주요내용

## 1 개 요

□ 한·중 FTA 협정문은 서문 및 총 22개 챕터(부속서 포함)로 구성

상품 관련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 칙
① 상품	⑦ 서비스	① 지재권	18 최초규정 및 정의
② 원산지(PSR 포함)	⑧ 금융*	① FRU	19 예외
③ 통관 및 무역원활화       ④ 무역구제	⑨ 통신*	<ul><li>④ 투명성</li><li>⑤ 환경</li></ul>	20 분쟁해결
⑤ SPS(위생·검역)	⑩ 자연인의 이동	(b) 전자상거래*	②1 제도
⑥ TBT(무역기술장벽)	① 투자	17 경제협력	② 최종조항

- \* 중국이 최초로 FTA에서 별도 챕터 채택(금융, 통신, 전자상거래)
- \*\* 한국의 기체결 FTA와의 비교 : 한-미 FTA(24개 챕터), 한-EU FTA(15개 챕터)

## 2 상 품

- ◈ 양국은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합의하고, 우리 농수산물은 대중 수입액의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
  - △ (中) 품목수 기준 91%, 수입액 기준 85%를 최대 20년내 관세 철폐 - 품목수 71%, 수입액 66%(1,105억불)를 10년내 철폐
  - △ (韓) 품목수 기준 92%, 수입액 기준 91%를 최대 20년내 관세 철폐 - 품목수 79%, 수입액 77%(623억불)를 10년내 철폐
- □ 농수축산물, 영세 중소제조업 등 민감분야 보호를 보호하면서도 주력·유망 수출 품목의 중국 시장접근 개선으로 **균형 잡힌 양허 협상 달성**
- □ 관세 분야뿐 아니라 중국의 높은 **비관세장벽 해소**에도 주력하여 우리 수출기업의 기업비용 절감

### □ 제조업 분야 주요 내용

- ① 향후 수출이 유망한 중소기업 품목의 중측 시장 개방 확보
  - ⇒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위해 고급생활가전(밥솥, 믹서 등), 패션 기능성 의류,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 등 고부가가치 소비재 개방

- 철강(냉연, 스테인리스 열연강판 등), 석유화학(프로필렌, 에틸렌 등), **주력** 소재도 일부 추가 개방
  - ※ 철강.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등은 일부만 개방
    - 현지화 전략 추진 품목(자동차, LCD), 중국내 공급과잉(철강) 등 감안

#### ② 국내 경쟁력 취약 업종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 섬유(면방, 모방, 화섬, 일부 의류), 베어링, 합판 , 초산에틸, 판유리 등 對中 경쟁열위 품목은 양허제외 또는 관세부분감축 등 보호장치 마련

#### □ 농수산업 분야 주요 내용

- ① 기존 FTA 대비 가장 낮은 수준의 개방
- ⇒ 쌀,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생선(조기, 갈치 등)를 비롯한 **주요 생산 농수산물 개방 차단** 
  - 일부 품목에 한정한 TRQ 제공 및 관세 소폭 감축 등을 통해 국내 생산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

## ② 중국 시장 농수산물 수출 확대 가능성 확보

⇒ 중국 농수산물 전체 품목의 93%(농산물 91%, 수산물 99%)에 대한 관세 철폐로 고품질·친환경 우리 농수산물 對中 수출 확대 기대

## □ 비관세장벽 분야 주요 내용 (상세 내용은 참고 2-3 참조)

- ① (실체적 내용) 상품, 서비스, 투자, 통관 절차, TBT 등 다양한 챕터에 걸쳐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실질적 규정 마련
- ② (기능적 내용) 상품위원회 산하에 비관세장벽 작업반 설치, 비관세장벽 신속 해결을 위한 중개절차 마련 및 우리 투자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중국 정부내 담당기관 지정 등

## 3 서비스·투자

- ◈ 금번 협상에서 DDA 수정양허안 수준 이상의 양허를 확보했으며,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통해 추가 양허 및 투자 진출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
- □ (서비스·투자) 중국의 법규·제도 정비에 상당시일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 금번 협상에서는 서비스는 포지티브 자유화방식을 채택하여 협정문 및 양허 작성, 투자는 투자 보호 요소가 포함된 협정문을 작성하고, 후속협상에서 네거티브 자유화방식\*으로 전환키로 합의
  - ※ 중국의 FTA 중 최초로 네거티브 자유화방식 채택에 합의
  - o 투자 챕터에는 내국민대우, 대우의 최소기준, 수용시 보상의무, 송금보장 등의 투자보호규범 규정
    - ISD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 제도를 도입하여 중국내 투자한 우리 투자자 보호
      - ※ 한-중 FTA ISD 규정은 한중일 투자보장협정('14.5) ISD 규정과 동일
- □ (금융) 중국 FTA 최초로 금융 별도 챕터에 합의하였으며, 금융 투명성 제고, 금융 관련 ISD 제기시 금융 당국간 사전 협의 근거 조항 포함, 금융 서비스 위원회 설치를 통한 금융 당국간 별도 협의 채널도 확보
- □ (통신) 투명한 경쟁 보장 장치 확보, 중국 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 완화를 통해 양국간 통신서비스 시장 진출 기반이 조성되었으며, 중국이 통신을 별도 챕터로 다룬 최초의 FTA라는 점에서 의의
- □ (자연인의 이동) 기업인 일시입국·체류 요건 등을 규정하고, 在中 주재원 최초 주재 2년(현재 1년) 확대 및 상용 방문자 복수비자 발급확대 합의

#### <중국측 주요 DDA 추가 양허 분야>

분야	반 영 내 용
법률	▶ 중국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의 중국 로펌과의 제휴 허용 (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 한정)
건 <i>축/</i> 엔지니어링	▶ 중국내 설립된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 인정
유통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한국 유통기업의 책 판매 허용
건설	▶ 중국내 설립된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 인정
환경	▶하수처리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순 한국기업 설립 허용
엔터테인먼트	▶49% 지분 한국기업 허용

## 4 규범·협력

- ◈ 중국의 FTA 중 가장 포괄적인 규범과 협력의 내용을 포함했으며, 각종 비관세장벽(NTB) 해소에 주력
  - $\square$  포괄적인 규범 분야 포함  $\rightarrow$  중국 기체결 FTA 중 가장 많은 22개 챕터

## 경쟁

- o (주요내용) 반경쟁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의무, 투명성·절차적 공정성·비차별 원칙 등 경쟁법 집행원칙\* 보장, 공기업 등에 대한 경쟁법 적용의무 규정, 경쟁당국간 협력의무 등을 규정
  - \* 관련법령, 조사절차 규칙 및 심리·의결의 공개, 의견진술권·증거제출권·재심 청구권 보장, 경쟁법 집행시 상대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대우 준수
- o (평가) 상대국 정부의 반독점행위 조사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법집행 방지 등 우리기업의 보호장치를 마련하였고, 공기업에 대해서도 경쟁법상 의무가 적용되므로 중국내에서 우리기업과 중국 공기업간에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짐

### ② 전자상거래

- o (주요 내용)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유지를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전자인증·서명, 개인정보보호, 종이없는 무역 등 실체적 요소들은 비강행 규정으로 반영
- o (평가) 중국 FTA 최초로 전자상거래 독립 챕터에 합의하였으며, 비록 구체적인 권리·의무 발생에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양국간 전자 상거래 촉진 기반 마련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③ 위생검역(SPS)

- o (주요 내용) WTO/SPS 협정 적용 재확인, 위생검역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협정 이행을 위한 위원회 설치 등 최소한의 내용을 위주로 규정
- o (평가) 농업계의 우려가 컸던 지역화 조항 등이 불포함되어 WTO/SPS 협정 이상의 추가적인 의무 부담없이 타결

## **④ 환경**

- o (주요 내용)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준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등 의무를 규정하고, 환경협력강화와 환경위원회를 설치를 규정하고 있음
- o (평가) 한중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 고려시 환경문제가 양국에게 중요한 이슈임을 감안하여 FTA내 독립챕터로 규정되었으며, 중국 기체결 FTA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
  - 포괄적인 적용범위와 핵심적인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어, 중국 중앙 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환경법 집행, 다자환경협약 준수 등 다방면에서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 ※ 중국이 기체결 FTA 중 환경분야를 독립챕터로 구성한 것은 중-스위스 FTA가 유일하며, 중-스위스 FTA에서는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 환경협약준수, 환경법 효과적 집행 등 핵심조항이 의무가 아닌 권고수준

## ⑤ 무역기술장벽 (TBT)

- o (주요 내용) 전기용품 국제공인 성적서 상호수용 촉진, 자동차 부품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협상개시, 화장품 의약품 허가신청 절차 내국민 대우 부여 등을 통해 시험인증과 관련된 구조적 애로 해소 가능
  - 또한 기술규정 제·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 기간(60일)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제품안전 보호강화와 국내 시험인증기관의 중국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o (평가) 양국은 기체결 FTA보다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협정문 (15개 조항, 기존 10개 내외)에 합의하는 등 향후 양국간 기술 협력의 확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평가

#### 6 무역구제

- o (양자세이프 가드) 한중 FTA 양허로 인한 국내기업 피해 구제 가능성을 확보하고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방지 조항을 통해 수출 기업의 예기치 않는 피해를 방지
- o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시점(7일전)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할 의무를 규정하여 악용 가능성을 예방
  - 또한 반덤핑 마진 산정시 제로잉(zeroing) 미사용 관행 확인
- o (무역구제위원회) 별도의 논의채널을 만들어 한중 FTA 무역구제 제도 이행관련 사안 및 기타 의제 논의를 통해 관련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협의를 통해 해결기회를 제공

### **7** 분쟁해결

- o (주요내용)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 시한을 규정하여, 신속한 분쟁 해결 유도, 비관세조치에 대해서는 중개절차 (Mediation) 제도를 도입하여 분쟁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
  - ※ ▲제소국 협의요청시 피소국의 답변의무(10일 내), ▲최종 패널위원 선정시부터 120일 내 중간보고서 제출, 중간보고서 제출시부터 45일 내 최종보고서 제출 의무 등
- o (평가) 중국 진출 우리기업의 최대 애로 사항인 비관세조치에 대한 중개절차 도입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상이슈 해결방안 마련

### 8 원산지

- o (주요내용) ①원산지 규정 : 정의조항, 원산지 판정의 기본원칙, 역 내부가가치 계산방식 등, ②원산지 절차 : 특혜관세 사후신청,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관세위원회 설치 등, ③ 품목별 원산지 기준 (PSR) : 5,205개 품목별 원산지 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등)
- o (평가) ①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 생산 제품에 대한 원산지 지위 인정 및 특혜관세 부여, ② 미화 700불 이하 물품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됨에 따라 소액 물품 수출입에 대한 기업 편의 제공

## 9 통관 및 무역원활화

- o (주요내용) ①일관성: 관세법령을 모든 세관에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보장, ②원활화, 투명성: 통관 절차 원활화, 관련정보의 공개 및 질의응답 창구 지정, ③관세위원회: FTA 이행을 위한 "관세위원회" 및 "통관 및 무역원활화 소위원회" 설치
- o (평가) 상품의 반출시 전자적 서류제출, '48시간내 통관' 원칙 및 '부두 직통관제'를 명시하고 특송화물에 대해 간소화된 별도 절차가 적용되도록 함에 따라 통관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

### 10 지적재산권

- o (전반적 평가) WTO 지재권 협정(TRIPS) 수준을 상회하는 조항 등을 통해 지재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지재권 위반에 대해 분쟁해결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
- o (저작권 등)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공연, 방송사업자)'을 강화하고 중국내 한류 컨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 그간 중국이 법체계 미비로 반대해 왔던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방송신호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한 사전 허락권) 인정
  - 우리나라 방송사업자의 방송 보호기간이 중국 내에서 20년에서 50년으로 연장
  - 실연자 (performer)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청구권 부여,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에 대한 기술보호조치·권리관리정보 보호 명문화 등
- o (상표권) 외국의 유명상표 보호 강화를 규정하여 중국기업의 악의 적인 상표선점이나 유사상표 등록을 방지하고 상표등록 및 이의 제기 절차를 보장하여 우리기업의 상표권 보호장치를 마련
- o (실용신안) 실용신안권 분쟁시 근거자료 제출을 규정하여 우리 기업에 대한 중국 실용신안권자의 남소 등 권리주장 남용을 방지 하는 장치를 마련
- o (집행강화) 지재권 관련 판결, 법령 등을 공개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통한 손해액 입증부담 완화, 지재권 침해물품의 압류·폐기를 명문화하고,
  - 디지털 기술로 인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재권 집행 규정을 강화하여\* 위조, 불법복제 등 권리침해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권리구제 장치를 확보
    - ※ 기술적 보호장치 및 인터넷상 침해 방지 조항을 도입하는 한편, 영화관내 도촬시 형사처벌규정, 형사소송 등에서 권리자 추정규정 확보 등 중국내 저작권 집행 보장 근거 마련

#### III 투명성

- o (주요내용) ①협정관련 조치는 사전 공표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 제출을 위한 일정기간 제공, ②협정 적용 관련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양국의 접촉선 지정, ③협정운용에 중대한 조치는 상대국에 통보하고, 관련 정보요청시 30일내 정보제공
- o (평가) 중국내 진출한 우리기업 및 국민들이 중국법령(안) 등에 대한 의견을 사전에 제출 가능하게 되어 우리측 의견 반영 채널 확보

## 12 경제협력

- o (주요내용) 양국의 관심분야에 대한 다양한 협력에 합의하고, 세부 분야별 협력강화 계기를 마련하였음
  - ①산업협력 및 기타협력 분야에서는 철강·중소기업·정보통신·섬유·에너지자원·과학기술·해상운송·관광·문화방송·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지방협력 분야가 있으며, ②농수산분야는 투자증진, 농식품무역 및 투자 협력 강화, 정보 교환 및 ③정부조달 관련사항(추가협상 포함) 규정
    - ※ 양국 수산 협력 목적 중 하나로 '지속가능하고 책임 있는 어업'을 명시하여, 합법적인 어업활동과 건전한 수산물 교역 촉진 원칙 재확인
- o (평가) 각 산업 분야별로 양국간 협력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중 FTA를 근거로 보다 구체적인 협력사업 전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

## 🔟 기타 (제도, 예외, 최초규정 및 정의, 최종조항)

- o 이행을 감독하는 최고기구로 장관급 협의체(Joint Commission) 설립
- o 국가 안보상 조치 및 과세 조치 등은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
- o 지방정부의 FTA 준수 의무 규정 포함
- o 국문본·영문본·중문본을 정본으로 이견시 영문본 우선

## 4. 향후 추진계획

### 1 향후 작업 계획

- □ 협정문안 확정 및 가서명 → 영향 평가 → 서명 → 협상결과 국회보고 → 국회 비준동의 → 설명회 → 발효
  - o (가서명) 협정문안 작업과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여 가서명 등 관련 절차 완료 추진
  - o (영향평가) 한·중 FTA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전반적 영향, 국가의 재정에 미치는 영향, 국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평가(관련 용역 발주 예정)
  - o (협상결과 국회보고) 통상절차법에 따라 정식 서명을 마친 때 국회 (산업위)에 협상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 예정

## 2 종합대응 체계가동

- □ (한・중 FTA 民官 대책반 가동) 한・중 FTA 관련 종합적인 대응을 위해 '한・중 FTA 民官 대책반'을 구성・운영 (11.12일~)
  - \* 산업부 1차관·무역협회 부회장 공동반장,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 참여
- □ (한·중 FTA 업종별 대책반 운영) 민관 대책반 산하에 '한·중 FTA 업종별 대책반'을 운영하여 업종별로 특화된 세부 논의 진행

- <주요 기능>

- ① 협상결과를 토대로 각 산업계 의견 수렴
- ② 업종별 특성에 맞는 경쟁력 강화 및 국내보완대책 과제 발굴 ·논의
- ③ 수출·투자 유치, 서비스 시장 진출 등 효과 제고 대책 과제 발굴·논의
- (대상 업종) 섬유・의류, 철강, 전자・전기, 석유화학, 자동차・부품, 일반기계, 생활용품, 농축산물, 수산물 등
- (대책반 구성) 주요 업종 소관부처를 반장으로 하고, 업종별 협회·단체,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

## 3 산업별 경쟁력 강화 등 국내보완대책 수립

□ (한·중 FTA 보완대책 준비과제) 협상 진행 과정부터 추진 가능한 취약산업 경쟁력 제고와 체질 개선을 위한 새로운 지원 대책 발굴

#### --- <한・중 FTA 준비과제 주요내용> -

- (**농수산업 분야**) 파급효과를 감안, 우리 농어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에 중점
- (제조업 분야) 섬유·생활소비재 등 취약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활로개척, 무역조정지원 제도 개선 등 에 초점
- □ (영향평가 이전) 한·중 FTA 업종별 대책반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산업계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보완대책 과제 발굴
- □ (영향평가 이후) 산업별 영향평가 결과와 업종별 대책반 논의 과제를 토대로 국내보완대책 수립 착수
  - 농수산업·제조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쟁력 강화 대책 수립(재정지원 계획 포함)
    - ※ 보완대책 수립에 한·미 FTA는 7개월, 한·EU FTA는 1년 소요

## 4 FTA 경제적효과 제고를 위한 선제적 준비

- □ (효과제고방안 선제적 수립) 한·중 FTA 활용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중국 시장 진출 관련 정보제공 강화
  - **한・중 FTA 활용 및 효과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 (\*15년 上)
    - \* '對중국 교역 확대 방안'('14.9월) 추진 외, 한-중 FTA에 특화된 지원 방안 모색
  - 관세율·통관정보·투자·비관세장벽 등 중국 內 시장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가서명 이후 유망 품목선정 및 활용전략을 소개
    - \* 'FTA강국, KOREA'(산업부 FTA 포털), 'FTA 1380(무협)', '무역정보통합시스템 (Trade-navi)' '글로벌 윈도우(KOTRA)'등을 통해 한-중 FTA 정보 제공 강화

제2부 한·중 FTA 분야별 내용

-	16	_
	16	

## 1 상 품

### [ 상품 협정문 ]

- □ 비관세조치 해결을 위한 규정 및 협의 메커니즘 도입
  - o (일시반입) 직업용품, 상업 샘플, 전시회 물품 등에 대한 무관세 일시 반입 허용 규정 도입
    - ※ 일시반입 관련 국제 협약(까르네 협정)상의 중측 일시반입 허용 범위(직업 용품, 상업적 샘플에 대한 유보 유지)보다 확대
  - o (수출입 제한) 에너지·광물 자원 수출제한 조치 도입시, 사전 서면 통보 의무를 규정하여 수입국의 예측가능성 제고
  - o (수입 허가) 신규 수입허가 조치 도입 또는 수정시 사전 통보 의무를 부여하고, 미통보시 상대국에 적용을 제한함으로써 수출국의 권리 보호
  - o (비관세조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조치 발효 전 유예 기간을 부여하도록 하여 수출국의 참여 및 의견제시 가능성 제고
    - 비관세조치 작업반 설치를 통해 비관세조치 관련 수시 협의채널 구축
  - o (시험기관 상호인정) 식품·화장품 검사기관 지정을 위한 양국간 협의 조항 도입
- □ 관세의 단계적 철폐, 인상 금지 등 상품의 시장접근 의무사항 규정
  - o (시장 개방 가속화) 상대국 요청시, 관세철폐 일정 가속화 검토를 위한 협의 의무를 규정
  - o (현행 유지) 관세 인상 및 신규 관세 도입을 금지하여 협정 발효 후 시장 장벽이 높아지는 상황 방지
    - ※ 우리 쌀에 대해서는 적용 배제 장치 마련

## [ 상품 양허 ]

#### 가. 전체 상품

- □ 양측 모두 모델리티 자유화율(품목수 90/수입액 85%) 초과 달성
  - o 협정 발효 후 20년 이내에 대다수 교역 품목에 대한 관세철폐에 합의
    - (韓) 품목수 92%, 수입액 91% ↔ (中) 품목수 91%, 수입액 85%

#### □ 전체 품목 양허 수준 비교

- o 즉시철폐 : (韓) 품목수 50%, 수입액 52% ↔ (中) 품목수 20%, 수입액 44%
  - 유관세 기준 중측 즉시철폐액(87.1억불)이 우리(80.4억불) 상회
- o 10년내 철폐 : (韓) 품목수 79%, 수입액 77% ↔ (中) 품목수 71%, 수입액 66%
  - 유관세 기준 중측 10년내 철폐액(457.9억불)이 우리(284.7억불) 상회

품목군		F	2리	중국	
<u> </u>	<b>寺正</b>	품목수	수입액	품목수	수입액
	즉시	6,108 <b>(50%)</b>	418.5억불 <b>(52%)</b>	1,649 <b>(20%)</b>	733.7억불 <b>(44%)</b>
01111	(유관세)	4,125 <b>(34%)</b>	80.4억불 (10%)	958 <b>(12%)</b>	87.1억불 <b>(5%)</b>
일반 품목	5년내	1,433 <b>(12%)</b>	31억불 <b>(4%)</b>	1,679 <b>(20.5%)</b>	58.3억불 <b>(3.5%)</b>
	10년내	2,149 <b>(18%)</b>	173.3억불 <b>(21%)</b>	2,518 <b>(31%)</b>	312.5억불 <b>(19%)</b>
	소계	9,690 <b>(79%)</b>	622.8억불 (77%)	5,846 <b>(71%)</b>	1,104.5억불 <b>(66%)</b>
0171	15년내	1,106 <b>(9%)</b>	79.5억불 <b>(10%)</b>	1,108 <b>(13.5%)</b>	219.2억불 <b>(13%)</b>
민감 품목	20년내	476 <b>(4%)</b>	34.1억불 <b>(4%)</b>	474 <b>(6%)</b>	93.75억불 (5.6%)
	소계	1,582 <b>(13%)</b>	113.6억불 <b>(14%)</b>	1,582 <b>(19%)</b>	312.9억불 <b>(19%)</b>
	양허제외	852 <b>(7%)</b>	42.9억불 (5%)	637 <b>(8%)</b>	149.9억불 (9%)
초민감	부분감축	87 <b>(0.7%)</b>	22.8억불 (3%)	129 <b>(1.6%)</b>	100.1억불 (6%)
품목	TRQ	21 (0.2%)	5.7억불 (0.7%)	-	-
	소계	960 <b>(8%)</b>	71.3억불 <b>(9%)</b>	766 <b>(9%)</b>	250.1억불 (15%)
Ē	합계	12,232 (100%)	807.7억불 (100%)	8,194 <b>(100%)</b>	1,667.5억불 <b>(100%)</b>
자유화율		11,272 <b>(92%)</b>	736.4억불 <b>(91%)</b>	7,428 <b>(91%)</b>	1,417.4억불 (85%)

※ 품목수는 HS 2012 한국(HSK 10단위), 중국(HSC 8단위), 수입액은 '12년 수입액 기준

※ 추후 중측과 양허안 검증 관련 기술협의 과정에서 일부 품목 미세조정 가능

#### 나. 궁산품 (임산물 포함)

- □ 양측은 전체 공산물 분야 품목의 90% 이상을 최대 20년내 관세철폐
  - o 중국은 품목수 20%, 수입액 44%를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하고, 품목수 72%, 수입액 66%를 발효 후 10년 내 단계적으로 철폐
  - o 우리는 품목수 59%, 수입액 54%를 발효 즉시 관세 철폐하고, 품목수 90%, 수입액 80%를 발효 후 10년 내 단계적으로 철폐
- □ 영세 중소제조업 등 민감 분야에 대한 보호와 함께, 중국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주력·유망 수출 품목의 시장 접근 개선을 확보
  - o (공세적 이익) 중국의 전체 품목 90%(수입액 85%)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중국 내 주요 경쟁국인 일본, 대만, 미국, 독일 등에 비해 유리한 경쟁 조건 확보
    - 철강(냉연·열연·도금강판 등)·석유화학(프로필렌·에틸렌 등) 등 **일부 주력** 소재 제품에 더하여, 고급 소형 생활 가전(밥솥·믹서 등), 패션(의류·악세사리 등), 영유아용품, 스포츠·레저용품, 건강·웰빙제품(의료기기 등) 등 기술력을 보유한 우리 중소기업 제품들이 對中 특혜 관세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하여, 급성장하는 중국 내수 소비재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
  - o (민감성 보호) 우리 영세 제조업의 민감성을 고려, 양허제외 및 관세 부분감축, 관세 장기철폐 등 다양한 예외수단을 활용하여 기체결 FTA에 비해 광범위한 보호 장치를 확보
    - 섬유, 수공구, 베어링 등 **영세 중소 제조업 품목** 및 합판, 제재목 등 목재류에 대해 양허제외, 관세 부분감축 등의 보호 장치를 활용하여 시장 개방 충격 최소화
    - 자동차의 경우, 중측의 개방 불가 입장 및 우리의 현지화 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국 모두 시장 개방에서 제외

#### 다. 농수산물

- □ 우리는 품목수 기준 30%, 수입액 기준 60%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수입액의 30%를 양허 제외하는 등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보호
  - o 중국은 농산물 전체 품목의 91%, 수산물의 99%를 관세 철폐한바, 고품질·친환경 우리 농수산물의 對중국 수출 확대 가능성 제고
- □ 우리는 쌀,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수산물(조기, 갈치, 오징어 등)를 비롯한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을 양허 제외하여 시장 개방 효과 차단

	한-미	한-EU	한-호주	10개국 평균	한–중
우리 농수산	98.9%(품)	97.2%(품)	88.6%(품)	78.1%(품)	70%(품)
자유화율	99.1%(수)	99.8%(수)	98.6%(수)	89.0%(수)	40%(수)

- \* 70%(품)/40%(수) 자유화율은 국내 연구기관의 최대 방어 시나리오보다 낮은 수준
- o (TRQ)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TRQ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 및 수급 안정을 기할 수 있는 품목 중에서 선정
- o (부분감축) 양허 제외 품목에 비해 국내적으로 상대적 민감성이 덜한 품목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한된 범위의 관세 감축을 통해 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 완화
- □ 중국은 전체 농수산물의 93%(농산물의 91%, 수산물의 99%)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여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 기반 마련
  - o (농산물) 우리 30대 주력 수출품목(전체 수출액의 93%)중 21개 품목에 대해 양허 개선
    - ※ 커피조제품, 비스킷, 음료, 인스턴트 면 등 관세철폐 기대
  - o (수산물) 전체 품목의 99%가 개방됨에 따라,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中 수출 품목의 수출 확대 기대

## 2 원산지 (규정, 절차, PSR)

- □ 양국의 교역구조, 기체결 FTA 원산지 규정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 하여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합의
  - o (규정) 원산지 판정의 세 가지 기본원칙\*과 보충적 원산지기준\*\* 등 특혜원산지 지위 부여를 위한 기준(rules) 규정
    - \* ① 당사국에서 완전 생산된 경우 ② 원산지 재료를 가지고 당사국에서 생산된 경우 ③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당사국에서 생산(PSR 충족 전제)
    - \*\* 미소기준, 누적, 불인정공정, 대체재, 간접재, 직접운송 등에 대해 규정
    - 한반도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원산지 지위 인정 및 협정 발효와 함께 특혜관세 부여
  - o (절차) 일반적인 특혜관세 신청 절차뿐만 아니라 특혜관세 신청에 관한 다양한 특례 규정\* 명시
    - \*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특혜관세 사후신청 가능, 미화 700불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등
    - 또한 불법적인 특혜관세 향유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 검증 시스템** 구축 및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 위원회 조항** 마련
  - o (품목별 원산지기준) 생산과정, 교역패턴, 글로벌 아웃소싱을 고려, 약 5,205개(HS 6단위 기준)에 이르는 개별품목의 원산지 기준을 규정
    - ▶(**농수산품**) 신선농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WO)으로, 가공농수산물은 세번 변경기준 중심으로 설정
    - ▶(공산품) 전반적으로 업계 활용 편의를 고려한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합의, 일부 품목의 경우 부가가치기준 적용
- □ 사용자 친화적인 원산지 규정을 통해 우리 업체들의 한중 FTA 활용률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o EEZ 기국주의, 섬유류 미소기준의 중량기준 인정 등 우리 旣체결 FTA 원산지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
  - o 특혜관세 신청 절차상 특례를 통해 對中 수출입기업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보다 폭넓게 향유 가능

## 3 통관 및 무역원활화

- □ 통관 절차의 신속·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적인 세관행정을 확보 하기 위한 조항들을 명시
  - o (일관성) 각 지역 세관에서 관세 법령을 일관성 있게 집행하고 비일관적 집행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수단을 마련할 의무 명시
  - o (상품의 반출) '48시간 내 통관' 원칙\*,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
    - \* 관세 납부 등 법령상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48시간 이내에 통관
    - 또한 전자적 서류제출에 의한 사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
  - o (분쟁해결절차) 일방 당사국의 요청시 60일내 협의 개시, 미해결시 관세위원회에 상정하여 해결방안 논의
  - o (세관 협력) 세관절차 및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해 전문가 교류 실시, 동 챕터의 이행 및 양국이 결정하는 사안에 대해 상호 지원
  - o (기타) 통관 절차의 원활화,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력, 자동화 시스템 활용, 저위험 품목 통관 원활화, 사후심사 원칙 등 명시
- □ 한·중 FTA 발효시 對中 수출입 기업들의 중국 통관 관련 애로 사항이 다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
  - o 중국 내 지역세관들의 비일관적 집행 문제 개선
  - o 통관 절차의 신속·간소화로 인한 기업들의 비용 및 시간 절감
  - o 협정의 이행 점검 및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협정 이행상의 실효성 확보 가능

## 4 무역구제

#### 가. 협상 주요 내용

- □ (세이프가드) 국내산업 보호를 위한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 구축 및 발동·재발동 제한 등 조치 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 마련
  - o (발동 제한)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를 구제 내지 예방에 필요한 정도 및 기간,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한도 내에서 조치 발동 가능
  - o (재발동 제한) 세이프가드 재발동시 이전 조치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전 조치 후 최소 2년간 재발동 금지
  - o (점진적 자유화) 세이프가드 조치 시행 1년 후 일정 간격을 두고 의무적인 점진적 자유화 시행
- □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 시점 명확화, 가격 약속 협의, 제로잉 미사용 관행 확인 등 WTO plus 규정 도입
  - o (반덤핑 통지/협의) 반덤핑 조사개시 7일 전 상대국에 신청 접수에 대한 통지를 시행하도록 하여, 통보 시점을 명확화하고 협의 가능성 규정 마련
  - o (가격 약속)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시 예비판정 이후 수출자 또는 정부에 의해 제안된 가격약속 관련 협의 기회 부여
  - o (제로잉 금지) 현재 제로잉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있고, 추후에도 이러한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확인 규정 마련
- □ (무역구제위원회) 이행 및 기타 의제 논의 위원회 설치

## 나. 평가 및 의의

- □ (세이프가드) 양자 세이프가드 제도를 마련하여 한중 FTA 양허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 구제 가능성 확보 및 상호 세이프가드 남용 방지 조항을 통한 수출 기업 피해 방지
- □ (반덤핑·상계관세) 반덤핑 조사개시 전 통지 시점 명확화로 상대국 반덤핑 조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가격 약속 고려 및 협의 규정을 통해 최종 조치 판정에 이르지 않도록 상호 노력
- □ (무역구제위원회) 한중 FTA 무역구제 제도 이행 관련 사안 및 기타 의제 논의를 통해 관련 분쟁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

## 5 위생·검역 (SPS)

- □ 검역주권에 대한 우리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하여 WTO/SPS 협정 수준의 SPS 챕터 구성에 합의
  - ※ 목적, 정의, WTO/SPS 협정 재확인, 기술협력, SPS위원회, FTA분쟁해결절차 적용배제 등 총 6개 조항으로 구성
  - o (WTO/SPS협정의 재확인) 양국간 WTO/SPS 협정이 적용되며 SPS 챕터의 일부가 된다는 것을 재확인
  - o (기술협력) 양국의 SPS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SPS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
    - ※ 정보교환, 전문가 파견, 실험능력배양, 공동연구 등 양국간 SPS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협력 고려
  - o (SPS 위원회) WTO/SPS 협정의 이행 및 양국 간의 SPS 사안에 대한 협력과 협의를 강화하기 위해 SPS 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1회 이상씩 개최
    - ※ 향후 우리 농산물의 중국 진출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 채널 역할가능
  - o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SPS 챕터상 규정된 의무는 FTA 분쟁해결 절차 적용 배제
- □ 우리측 입장을 반영하여 SPS챕터가 타결됨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 위생검역 기준 및 규정 등을 개정할 필요가 없음

## 6 무역기술장벽(TBT)

- □ WTO 무역기술장벽 협정(TBT) 수준 이상의 TBT 애로 완화방안을 포괄적으로 규정
  - o (국제공인 시험성적서 상호수용) 전기전자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충족시켜야 하는 적합성평가절차와 관련하여,
    - 양국은 IECEE CB Scheme(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에 따른 시험소의 시험결과 상호수용을 촉진키로 합의
      - ※ IECEE CB Scheme(국제전기기기 인증제도):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국제공인 인증제도로서, 통일된 규정(IEC 국제표준)에 따라 발행된 시험성적서를 회원국간 상호수용
  - o (시험·인증기관 설립 지원) 양국 수출기업에 대한 양질의 시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합성평가기관을 상대국에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
    - 시험·인증 비용 및 기간 단축, 중국 기술규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해서는 국내 적합성평가기관의 중국 진출이 필요
  - o (시험·인증 애로완화) 중국 강제인증(CCC인증 등) 취득 관련 우리 업계의 애로를 완화하기 위해 시험·인증 비용 및 기간 축소, 시험용 시료 통관 원활화, 기술규정 제·개정시 정보제공 등을 규정
  - o (소비자 제품안전 협력) 리콜, 사후관리 등 소비자 제품안전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제품안전 모니터링 등을 통한 규제협력을 강화
- □ IECEE CB 성적서 수용촉진, 시험용 샘플통관 등 업계의 TBT 애로 해결방안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협정문에 반영되었으며,
  - o 소비자제품 안전, 시험인증기관 설립에 대한 협력 등이 신규로 포함 되어 가장 포괄적인 협정문(15개조)을 구성

## 7 서 비 스

## [ 서비스 협정문 ]

- □ Positive 방식(GATS)에 기초한 협정문 작성
  - o 협정문 주요 조항

조항	주요 내용
시장접근	o 서비스 공급자의 수 또는 사업의 범위를 한정하는 양적 제한, 사업자의 법적 형태 등을 제한하는 규제 도입 금지
내국민 대우	o 상대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 부여 의무
국내규제	o 국가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비스 공급을 규제할 수 있는 국가의 권리를 인정 o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 표준, 면허요건과 관련된 조치가 서비스
	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아니하도록 노력
지불 및 송금	o 서비스 거래 관련 송금 또는 지불 허용 원칙 및 제한 사유 명시

- □ 부속서로 영화 및 TV 드라마(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포함
  - o 영화 공동 제작시 국내 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토록 하는 부속서를 포함
    - TV드라마,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 (built-in 조항) 포함
- □ Negative 후속협상 합의(협정 발효후 2년내 개시 예정)를 통해 향후 추가 자유화 근거 확보
  - o 중국이 서비스 분야 Negative 자유화 방식에 따른 후속협상을 합의한 것은 한.중 FTA가 최초
  - o 후속협상시 투자챕터와 연계하여 통합 유보리스트 작성 예정
    - 협상 개시후 2년내 협상 종료 예정

## [서비스 양허]

- □ 법률, 건축설계·엔지니어링, 건설, 유통, 환경, 엔터테인먼트 등 분야에서 DDA 수정양허안 보다 높은 수준의 양허 확보
  - o 향후 네거티브 방식 후속협상을 통해 자유화 수준 확대 가능성 기대

〈중국측 주요 DDA 추가 양허 분야〉

	분야	반영내용
1	<b>则</b> 到 50	▶중국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은 중국 로펌과 제휴 가능 (상해 FTZ에 한정)
2	건축/ 엔지니어링	▶중국내 설립된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 인정
3	유통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한국 유통기업의 책 판매 허용
4	건설	▶중국내 설립된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 인정
5	환경	▶하수처리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순 한국기업 설립 허용
6	엔터리인먼트	▶49% 지분 한국기업 허용

## 8 금 융

- □ 금융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 금융 별도 챕터 합의(중국 최초)
  - \* 중국은 기체결 FTA에서 금융을 부속서나 협정문 일부 섹션으로 구성
  - o 금융 관련 규정 사전 공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금융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 투명성 제고 방안 합의
  - o 금융 관련 ISD 제기시 금융 건전성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 당국간 사전 협의 근거 조항 포함
- □ 금융 서비스 위원회 설치를 통해, 금융 당국간 협의 채널 확보
  - o 금융 챕터 이행 상황 점검 및 금융 애로 사항 해소 창구로 활용 가능

#### 〈협정문 주요 조항〉

조항	내용
건전성 조치	예금자 등의 보호, 금융제도의 완전성 및 안정성을 보장하기
예외	위한 사유로 건전성 조치 채택 및 유지 가능
투명성	금융규제의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전 공표 절차,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 금융 인허가 절차 신속처리 등
ISD	금융 관련 조치에 대한 ISD 제기시 금융 당국간 건전성
사전 협의	조치 해당 여부를 논의
금융 서비스	이행 상황 점검, 금융 챕터와 관련된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금융위원회 설치

□ 향후 금융 분야 네거티브 후속협상 조항(협정 발효후 2년내 개시)을 포함함으로써, 설립전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 금융 서비스 자유화 및 강화된 투자 보호 확대 기대

## 9 통 신

- □ 통신 분야 투명한 경쟁 보장 장치 확보
  - o 상대국 사업자가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 포함

#### 〈협정문 주요 조항〉

조항	내용
접근 및 이용	▶ 상대국 시업자가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필요한 경우 조건 부과 가능
상호접속	▶ 공중통신사업자가 상대국 사업자에게 상호접속을 비차별적으로 제공 하도록 의무 부과
경쟁보장 장치	<ul> <li>▶ 교차보조 행위 등 반경쟁적 행위 금지</li> <li>★ <u>교차보조 행위</u>: 자배적 사업자가 자신의 독점력을 통해 획득한 초과 이윤을 경쟁적인 다른 통신시장에 종사하는 자회사나 계열회사에 보조하는 행위</li> </ul>
해저케이블	▶ 자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상대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해저케이블 시스템에 대한 접근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비치별 대우를 부여하도록 보장

- □ 중국 진출 국내업계 애로사항으로 지목되었던 중국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 완화
- o 통신 분야 규제환경의 비차별성, 투명성, 예측가능성의 증대 기대
- □ 중국 FTA 최초로 통신 분야 별도 챕터 구성에 합의
  - o 통신 서비스는 그 자체가 서비스 교역활동이면서 동시에 다른 경제 활동의 토대가 되는 수단으로, 통신 별도 챕터를 통해 여타 서비스 분야 동반성장 및 활성화 기대
    - ※ 중국은 기체결 FTA에서 통신을 부속서나 협정문 일부 섹션으로 구성

#### 10 자연인의 이동

- □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관련 양국 기업인의 이동 활성화 보장
  - o 상용 방문자,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체류 관련 요건 및 체류기간 명시
- □ 비자 원활화 부속서를 신설, 양국간 비자 애로 해소 약속을 포함
  - o 기업내 전근자 및 투자자의 최초 체류기간 2년\* 확대
    - \* 중국은 우리 기업내 전근자 및 투자자에게 기본적으로 1년 단위의 취업 허가 및 체류 허가를 부여하여 현지 진출 우리 투자 기업인(기업내 전근자) 등이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
  - o 취업 거주 허가(중국), 외국인 등록증(한국) 연장 절차 원활화
  - o 상용 방문자에 대한 복수 비자 발급 확대
- □ 향후 투자 및 인력이동 확대 방안 협의 조항 포함
  - o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양국간 상호 투자와 인력이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양국 담당 부서가 계속 검토한다는 내용 포함

#### 11 투 자

- □ 설립후 투자의 효과적 보호를 위한 핵심 조항을 협정문에 포함
  - o 내국민 대우(NT), 이행요건(PR) 부과금지, 수용, 송금,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등 투자 보호 조항 포함
  - o 외국인 투자자 대우의 최소기준(MSOT) 조항을 포함하여 최근 국제 투자 논의 동향을 반영
- □ 대중 투자자 애로 해소를 위한 투자 문의처(contact-points) 설치 합의
  - o 중국의 중앙 및 지방 단위(省)까지 설치하여 투자 애로 해소를 지원
  - o 우리 기업의 가장 큰 애로인 청산절차 등을 포함하여 기업 활동 전반에 걸친 관련 정보 제공
- □ 협정 발효후 2년내 설립전 투자를 포함한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 협상 개시에 합의함으로써 포괄적 투자 자유화 및 강화된 투자 보호 효과 기대
  - o 후속협상시 서비스 투자(mode 3 서비스)를 포함 전 분야 투자 유보리스트를 작성함으로써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 가능
    - ※ 중국은 네거티브 방식에 따른 중-미 투자협정(BIT)을 추진중이며, 2014년내 협정문 협상 완료 및 2015년 이후 유보 협상 진행 예정

#### <후속협상 관련 양측 합의 사항>

시한	o 협정 발효 후 2년 이내 개시 o 개시 이후 2년 이내 후속 협상 종결
원칙	o 설립전 투자 포함 o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o 서비스 투자(mode3) 포함 모든 투자를 투자챕터에 규정
주요 논의 의제	내국민대우(NT), 최혜국대우(MFN), 이행요건(PR) 부과금지, 고위경영진 및 이사회(SMBD), 비합치조치 (NCM),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 유보리스트 등

#### 12 지재권

- □ WTO 지재권 협정(TRIPS) 수준 이상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규정
  - o (상표권) 소리 상표를 규정하여 상표등록 범위를 확대하고, 해외 유명 상표 보호, 상표등록 이의제기 절차 등을 규정하여 중국내 악의적인 상표선점이나 유사상표 등록 방지장치 강화
  - o (저작권) 저작권과 저작인접권(공연, 방송사업자)을 강화하고 중국내 한류 컨텐츠 보호장치를 마련
    -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 인정, 우리나라 방송사업자의 방송 보호 기간을 중국 내에서 연장(20년  $\rightarrow 50$ 년)
    - \* 방송신호의 복제 및 전송에 대한 방송사업자의 사전허락권
    - 실연자 (performer)와 음반제작자에게 보상청구권 부여, 저작권과 저작 인접권에 대한 기술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보호 명문화 등
    - \* 기술적 보호조치(Technological Protection Measure) :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조치
    - \*\* 권리관리정보(Right Management Information): 어떤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과 구별하고, 그 저작물의 이용계약이나 권리처리를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저작물에 부착되거나 그 공연, 방송 또는 전송에 수반되는 것
  - o (집행) 집행조치 및 규정의 투명한 공표, 법정손해배상\*, 직권 국경 조치, 영화 도촬금지 조항, 인터넷상 반복적 저작권 침해 규제 등을 규정하여, 지재권 위반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하여 지재권자 보호
    - \* 법정손해배상(Pre-established damage) :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에서 법령상 정해진 손해액의 배상을 명하여 권리자의 구체적 손해액 입증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o (협력 및 위원회) 지재권 장의 이행 및 협력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위원회를 구성하여 양국간 지재권 협력 강화
- □ 소리 상표 보호, 실연자 및 음반제작자의 보상청구권, 저작권 관련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보호 등은 한·미 FTA와 동일한 수준의 내용으로 별도의 국내제도 개정 불요

### 13 경 쟁

- □ 경쟁법 집행원칙,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등의 실체적 내용을 포함한 경쟁 챕터 마련
  - \* 중측 기체결 FTA 경쟁챕터는 협력 조항 위주로 구성
  - o (경쟁법 집행 일반원칙) 경쟁법 집행시 투명성\*, 절차적 공정성\*\*, 비차별원칙\*\*\* 등 경쟁법 집행 원칙 준수를 통해 차별적·자의적인 경쟁법 집행을 방지
    - \* 경쟁법 관련 법령, 조사절차 규칙 및 심리·의결의 공개
  - \*\* 피심인의 의견진술권·증거제출권·재심청구권 보장
  - \*\*\* 경쟁법 집행시 상대국 국민에 대한 내국민 대우 준수
  - o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공기업의 행위도 경쟁법 적용 대상임을 확인하여 민간기업과 공기업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
    - \* 단, 경쟁법 적용에 따라 공기업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 부여된 임무 수행을 제한하지 않음
  - o (경쟁당국간 협력 의무) 경쟁법 집행시 상호 협력, 통보\*, 협의\*\*, 정보교환, 기술협력을 통한 경쟁당국간 협력 의무 규정
    - \* 일방 당사국의 경쟁법 집행이 타방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을 침해할 경우 타방 당사국에 통보
    - \*\* 일방 당사국이 요청할 경우 상호 이해 증진 또는 특정 사안을 다루기 위한 협의 개시
  - o (분쟁해결절차 비적용) 경쟁챕터상 규정된 의무는 FTA 분쟁해결 절차 적용 배제
  - □ 한·미 또는 한·EU FTA와 유사한 수준의 내용으로 별도의 국내제도 개정 불요

### 14 투명성

### □ 협정 관련 법령(안) 등 공표 및 의견 제출 기간 부여

- o 당사국은 협정 적용 사안 관련 조치(법령(안), 절차 등)를 신속 공표
- o 법령안 등은 가급적 사전에 공표하고, 이해관계인과 상대국에게 법령안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제공

#### □ 접촉선

- o 당사국은 협정 적용 관련 원활한 의사 소통을 위해 접촉선을 지정
- o 상대국 요청시 당사국의 접촉선은 해당 사안에 관한 담당 부서 또는 담당공무원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상대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도록 지원

#### □ 통보 및 정보의 제공

- o 협정의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상대국에 통보
- o 상대국 요청시 협정 운영 관련 정보를 30일 내에 제공할 의무

#### □ 행정절차

- o 협정 적용대상 조치를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 행정절차의 직접 대상이 되는 이해관계인에게 절차의 개시 시점, 절차의 성질, 법적 근거 및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 등을 사전 통지 하고 의견 개진 기회 부여

#### □ 재심 및 불복청구

o 협정 적용대상 조치에 관하여 사법·준사법·행정 구제절차를 마련 또는 유지하고 적법절차를 보장

### 15 환 경

#### 가. 주요 내용

- □ (의무 규정)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다자환경협약(MEAs) 준수, 환경법 효과적 집행 등 환경 챕터 핵심적 조항들을 규정
  - o (환경보호수준) 환경법과 정책이 높은 수준의 환경 보호를 제공, 장려하는 것을 보장, 보호수준 제고를 위해 지속적 노력 의무
  - o (다자환경협약) 국제적인 환경 관리 및 협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양국 모두가 당사국인 다자 간 환경 협정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의무 확인
  - o (환경법 집행)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환경법과 규칙, 조치들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의무 및 무역 또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환경법, 규칙, 정책 및 관행상의 보호수준 약화 또는 감소 금지 의무
- □ (양자 협력) 기존에 양국이 체결한 환경협력협정 및 양해각서를 기초로 양자 협력 (환경상품 보급 촉진, 환경기술발전협력, 환경보호 정책 교환, 전문가 교환, 환경시범단지 구축 등) 강화 약속
  - o 양 당사국은 2014. 7. 3. 서명된 한-중환경협력양해각서 등 기존 양자 협의에서 언급된 '대기오염의 예방 및 관리'를 포함, 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것을 재확인
- □ (위원회 및 분쟁해결) 환경과 무역 챕터와 관련한 분쟁은 분쟁해결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협의를 통하여 해결
  - o 접촉선을 통하여 협의 요청, 협정 이행을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위원회 개최 가능

#### 나. 의의 및 평가

- □ 한-중 양국의 지리적 근접성 등 고려 시, 환경 문제가 양국에게 중요한 이슈임을 감안하여 FTA 내 독립챕터로 포함
- o 중국이 환경 분야 독립챕터를 구성한 것은 중-스위스 FTA를 제외 하고는 한-중 FTA가 유일
- □ 포괄적 적용범위 및 환경챕터 핵심조항(환경보호수준, 다자환경협약, 환경법 효과적 집행)들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 중국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방정부의 환경법 집행, 다자환경협약 준수 등 측면에서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
  - o 환경과 무역 챕터 적용범위를 환경 이슈 관련 당사국(지방정부 포함)에서 채택, 유지하는 법, 규정, 조치까지 광범위하게 규정

#### 16 전자상거래

- □ 중국으로서는 최초로 FTA에서 전자상거래 챕터를 수용하였으며, 전자서명, 종이없는 무역, 개인정보보호 등 전자상거래 촉진기반 마련
  - o 한·미 FTA 전자상거래 챕터와 비교시에도 디지털제품의 비차별 대우는 미포함 되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조항은 유사하게 반영
- o 한·중 양국간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기존 부처별 양자채널이나, WTO 등 국제기구가 아닌 FTA 이행위원회를 통해 FTA 차원의 이슈해결방안 모색 가능
  - \* 온라인 결제과정의 개인정보 유출, 전자서명 · 인증 관련 협력이슈 등
- □ 협정문은 전자상거래 촉진을 위한 실체적 조항 5개와 목적, 분쟁 해결 배제 등 형식적 조항 4개 등 **총 9개 조항**으로 구성
  - \* 한·미FTA의 경우 총 9개 조항(실체 6, 형식 3)으로 구성
  - o 실체적 조항으로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제3조), 전자인증·서명(제4조), 개인정보보호(제5조), 종이없는 무역(제6조), 협력(제7조) 등 대부분 노력조항(endeavour)으로 반영
  - o 절차적 조항으로는 일반조항(제1조), 다른 챕터와의 불합치시(inconsistency) 다른 챕터 우선(제2조), 정의조항(제8조), 분쟁해결절차 적용 배제(제9조)를 포함

<참고: 한미FTA와 한중FTA 전자상거래 챕터 조항비교>

	일 반 조항	타장 과의 관계	다.털 제 품 무관세	전자 인증 서명	<b>쏴</b> 자 보호	종이 없는 무역	<b>얀</b> 넷 접근 원칙	국경간 정보 흐름	개인 정보 보호	협력	정의	분쟁 해결 배제
한미	0	0	0	0	0	0	0	0	Δ	×	0	×
한중	0	0	Δ	0	×	0	Δ	×	0	0	0	0

#### 17 경제협력

- □ 경제협력의 목적(제1조), 방법 및 수단(제2조)을 규정\*하고, 개별 협력 분야를 세부 조항에 상세 명시
  - \* 경제협력챕터는 특정분야에 대한 구속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한·중 FTA 분쟁해결챕터상 절차 적용 배제(제3조)
- □ 양국의 관심분야(산림, 철강,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 섬유, 정부조달,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해양운송, 관광, 문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지방협력 등)에 대한 다양한 협력활동 및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여, 양국간 세부 분야별 협력강화 계기 마련
  - o 양국 기체결 FTA 중 가장 많은 분야에서, 가장 상세한 경제협력을 규 정하여, 가장 폭넓고 구체적인 경제협력챕터로 평가
  - o 또한 철강, 섬유, 에너지자원, 해양운송, 의약품의료기기(방송포함)의 경우 중국 기체결 FTA 중 최초로 규정한 분야
  - o 중소기업, 특히 영세상인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협력 규정에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 중소기업 발전에 우호적 환경조성, △ 중소기업 관련 민관협력 강화, △ 중소기업(영세기업 포함) 경쟁력 제고 및 영세기업 관련 정보 교환 등
- □ 특히, 중국이 국내법제 개혁 과정에서 현재 시장개방이 어려운 서비스· 투자 관련 우리측 관심 분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방송 등)를 일단 경제협력챕터에 포함하여 향후 시장개방을 위한 논의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
- □ 정부조달 구체적 의무 사항 및 양허안을 규정하지 않는 대신에, 중국이 GPA 가입시 정부조달챕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는 추후 협상(further negotiation) 조항을 규정하여, 추후 한·중 FTA에 정부조달챕터를 포함하기 위한 기반 마련

### 18 최초규정 및 정의

#### □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o 양 당사국은 GATT 1994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도록 자유무역지대를 창설

#### □ 목적

- o 양국간 무역의 확대 및 다양화 촉진
- o 무역장벽의 제거 및 상품·서비스 교역 촉진
- o 당사국 시장 내 공정경쟁의 증진
- o 새로운 고용 기회의 창출
- o 양자, 지역, 다자 협력을 심화하기 위한 틀을 형성하여 본 협정의 이익을 확대·증진

#### □ 다른 협정과의 관계

o WTO 협정 등 양국이 회원국인 기존 협정상의 권리·의무 재확인

#### □ 의무의 범위

o 당사국은 지방정부가 본 협정상 모든 의무 및 약속을 준수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당사국 영역 내에서 본 협정 규정에 효력을 부여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

#### □ 영역적 적용

o FTA가 적용되는 영역에 관하여 규정

#### □ 정의

o 협정에 사용된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관세(customs duties), 일(days), 기존의(existing), GATS, GATT 1994, 당사국의 상품 (goods of a party), 수입허가협정(Import Licensing Agreement), 조치 (measure), 인(person)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

### 19 예 외

#### □ 일반적 예외

- o 상품 무역에 관하여 일반적 예외를 규정한 GATT 제20조\*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하여 일반적 예외를 규정한 GATS 제14조\*\*를 본 협정에 준용
  - \* (GATT 제20조상 예외 사유) 공중도덕 보호, 인간·동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금·은의 수출입,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호, 역사·예술 유물의 보호, 공급부족 상품의 취득·유통에 필수적인 조치 등
- \*\* (GATS 제14조상 예외 사유) 공중도덕 보호 또는 공공질서 유지, 인간·동 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안전, 사기 행위의 방지, 사생활 보호 등을 위한 조치

#### □ 안보상 예외

o 국가 안보상 필요한 조치에 대하여는 협정 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

#### □ 조세 예외

o 과세 조치는 원칙적으로 협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본 협정과 여타 조세 조약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조세 조약이 우선 적용

#### □ 정보 공개

o 협정상 어떤 내용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이익에 반하거나, 특정기업·공공·민간의 합법적인 상업상 이익을 손상하는 비밀정보의 제공 또는 접근 허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음

#### 20 분쟁해결

- □ 분쟁해결절차는 WTO 분쟁해결절차(DSU) 및 기체결 FTA의 분쟁해결절차와 유사하게, "①당사국간 협의 → ②패널설치 → ③패널보고서 제출 → ④패널 보고서 이행 및 보상 → ⑤양허 또는 기타 의무의 정지"의 순서로 진행되도록 규정
- □ 비관세조치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절차(Mediation)를 도입
  - o 사법적 분쟁해결절차만을 둘 경우, 비교적 오랜 시일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존재,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양측간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통상이슈에 접근하는 방안으로 중개절차 규정
  - o 사안 관련 전문적 지식 보유한 이해관계 없는 중개인이 협의를 진행 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권고하는 등 단순 협의보다 체계를 갖추는 방식
    - 즉, 양자 협의채널만으로는 특정 쟁점에 대한 논의 집중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이해관계 없는 제3자의 도움을 받는다면 상호 만족할 수 있는 결론 도출이 보다 용이
- □ 분쟁해결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 마련
  - o 분쟁해결의 모든 단계에서 구체적 시한을 규정하여, 신속한 분쟁해결 유도
    - 제소국이 협의요청시 피소국이 10일 내 답변 의무
    - 마지막 패널위원 선정시부터 120일 내 중간보고서 제출, 중간보고서 제출 출시부터 45일 내 최종보고서 제출
  - o 합리적 이행기간 결정을 위한 패널절차를 도입
  - o 패널판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패널보고서의 구속성을 명시하고, 불이행시의 양허·기타의무 정지(보복) 절차를 규정
- □ 서면자료 제출, 심리 절차 등 패널 세부 절차 사항 및 패널위원 및 중 개인의 의무 사항 등은 부속서[절차규칙(부속서 A), 행동규범(부속서 B)]에 별도로 상세 규정

### 21 제 도

#### 가. 주요 내용

- □ (공동위원회) 한·중 FTA 이행위원회로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중국 상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장관급 공동위원회 (Joint Commission)를 설치
  - o (기능) 협정 이행 및 개선 감독, 협정 수정 요청이 있을 시 고려, FTA 협정 내 위원회 및 기타기구 작업 감독, 무역과 투자 촉진 방안 모색, 협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이견 해소 모색 등 의무적 기능과, 임시 및 상설위원회 또는 기타기구 설치, 절차 규칙 채택, 기타 임의적 기능으로 구성
  - o (절차규칙) 1년 1회 개최 원칙, 위원회는 양국이 번갈아 개최, 컨센서스에 의한 의사 결정 등
- □ (위원회 및 기타기구) 양국은 12개 위원회 설치에 합의
  - o 상품, 서비스, 금융서비스, 자연인의 이동, 투자, 관세\*, 무역구제, SPS, TBT, 지재권, 환경, 경제협력 위원회 설치
    - \* 관세위원회 산하에 원산지 소위원회, 무역원활화 소위원회 설치
- □ (접촉선) 양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상무부를 각각 접촉선으로 지정

#### 나. 의의 및 평가

- □ 한·중 양국 교역관계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한·중 통상장관간 협의체인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였으며, 이는 중국이 체결한 FTA 중 한·중 FTA가 최초
  - o 중국의 기체결 FTA는 장관급이 아닌 고위급(senior official) 협의체로 규정하거나 의장을 특정하지 않음
    - ※ 우리는 FTA의 원활한 이행 확보를 위하여 한·미, 한·EU 등 대부분의 기체결 FTA에서 이행위원회를 장관급 협의체로 규정

### 22 최종조항

#### □ 부속서 및 각주

o 본 협정의 부속서 및 각주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 □ 개정

- o 당사국 간 합의로 협정 개정 가능
  - 개정에 합의한 후 발효되면 개정된 부분은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
- o 본 협정에 준용된 WTO 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일방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해 협의할 의무

#### □ 발효 및 종료

- o 협정은 양국이 각자의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통보를 교환한 날로부터 60일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기간 경과 후 발효
- o 일방 당사국이 협정을 종료할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그로부터 180일 경과 후 효력 종료

#### □ 정본

- o 국문, 중문 및 영문 협정문이 동등한 정본이 되며, 다툼이 있을 경우 영문본이 우선\*
  - \* 양측이 영어로 협상을 진행, 영문본에 가서명한 다음 한·중 번역본을 만든 점을 고려

# 제3부 참고자료

#### 참 고 1

### 한·중 FTA 협상 차수별 주요내용

#### 1 제1차 협상

- □ 일시 및 장소 : 2012.5.14, 중국 북경
- □ 수석대표 : (韓)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中) 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
- □ 주요 결과
  - o (협상운영세칙) 협상운영세칙(TOR: Terms of Reference) 확정
    - TOR에는 협상의 원칙, 협정의 대상, 단계별 협상방식,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분야별 협상지침(모델리티)의 골격 및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행정사항 등 향후 협상의 기본지침과 틀을 수록
  - o (TNC 설치) 무역협상위원회(TNC: Trade Negotiating Committee) 설치
    - 협상을 총괄·조정하며, 필요시 TNC 산하의 작업반 등을 설치하여 협상 운영
  - o (대상범위) 한·중 FTA 협정에 포함될 분야에 대한 1차적 의견 교환
  - o (기타) 상품분야 모델리티 작성시 필요한 교역통계 등 필요한 정보 교환

#### 2 제2차 협상

- □ 일시 및 장소 : 2012.7.3~5, 제주도
- □ 수석대표 : (韓) 최석영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中) 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
- □ 주요 결과
  - o (상품분야) 품목군에 대한 정의와 기준에 대한 논의를 개시
  - o (서비스·투자) 서비스와 투자 분야 작업반 개최
    - 양국의 법·제도에 대한 질의/응답 세션 개최 및 기체결 FTA 사례 소개 등을 통한 양측 제도 및 현황 파악
    - 서비스 및 투자분야 모델리티에 포함할 요소에 대한 논의
  - o (협상범위) 협정문 포함 대상범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원산지·통관· 무역원활화를 FTA 협정문에 별도 챕터로 포함하기로 합의

### 3 제3차 협상

- □ 일시 및 장소 : 2012.8.22~24, 중국 웨이하이
- □ 수석대표 : (韓)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中) 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
- □ 주요 결과
  - o (상품분야) 품목별 민감도에 따라, 일반·민감·초민감품목군으로 구분 하기로 하고,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의 정의 등에 합의
    - 일반품목군 : 한 중 FTA 협정 발효후 1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
    - 민감품목군 : 협정 발효후 10년이 넘는 기간동안 관세를 철폐
    - 각 품목군 설정시, 품목수와 수입액 기준 동시 적용
  - o (서비스,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작업반을 개최, 양국의 기체결 FTA 사례 소개 및 법·제도 등에 대한 정보교환을 통해 협상지침 마련을 위한 협상을 진행
  - o (경쟁정책, 정부조달, 지재권 및 전자상거래) 양국 전문가간 대화를 개최, 해당 분야에 대한 양국의 현황 파악작업 개시

### 4 제4차 협상

- □ 일시 및 장소 : 2012.10.30~11.1, 경주
- □ 수석대표 : (韓) 최경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 (中) 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
- □ 주요 결과
  - o (상품분야) 품목군 구분과 품목군별 정의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 비관세 장벽 및 무역구제 분야에 대한 논의 개시
  - o (서비스·투자) 금융, 통신, 일시입국, 항공운송, 건설서비스 등 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
  - o (규범 등 여타 분야) 우리측 작성 모델리티 문안에 기초하여 원산지, 통관·무역원활화, 전자상거래, TBT/SPS, 경쟁정책, 지적재산권 등 분야 관련 협상을 개최
    - 지적재산권을 협상 대상에 포함하기로 합의하였고, 농수산 협력이슈에 대한 전문가간 대화 개최

#### 5 제5차 협상

- □ 일시 및 장소 : 2013. 4.26~28, 중국 하얼빈
- □ 수석대표 : (韓)우태희 FTA교섭대표, (中)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
- □ 주요 결과
  - o (한중 FTA 추진의지 재확인) 이번 협상은 양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개최된 한중 FTA 협상으로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한중 FTA 추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함
  - o (상품 분야) 양측은 품목군별 정의 및 상세 처리방안 등 기존 논의를 바탕으로 상품 분야 자유화 수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한편, 비관세 장벽에 대하여도 논의를 진행
  - o (서비스·투자) 모델리티의 기본구조 및 서비스·투자 분야 포함 핵심 요소에 대한 의견 교환
  - o (규범 등 기타 분야) 원산지, 통관절차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경쟁, 지재권, TBT, SPS, 정부조달, 투명성 등 분야에서 작업반/전문가회의가 개최 되어 협상 기본 지침문안 마련 또는 협상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를 지속

### 6 제6차 협상

- □ 일시 및 장소 : 2013. 7.2~4, 부산
- □ 수석대표 : (韓)김영무 FTA교섭관, (中)쑨위앤장 상무부 부사장
- □ 주요 결과
  - o 양측은 6. 27. 한중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상 추진의 모멘텀을 활용, ①상품 모델리티 및 ②협정 대상 및 범위 등 기본사항에 대해 상당한 진전
    - (상품 모델리티) 자유화율 등 시장 개방 방식에 대해 의견 접근
    - (협정 대상 범위) 그간 이견이 있어온 경쟁, 투명성, SPS, TBT, 전자 상거래, 정부조달, 환경, 산업 협력 및 농수산 협력 분야 등을 모두 협정 대상 범위에 포함키로 합의

#### 7 제7차 협상

- □ 일시 및 장소 : 2013. 9.3~5, 중국 웨이팡
- □ 수석대표 : (韓)우태희 FTA교섭대표, (中)위지앤화 상무부 부장조리
- □ 주요 결과
  - o 1단계 협상 마무리 : 모델리티(Modality, 협상기본지침) 합의
    - 금번 협상에서 양측은 1단계 협상 모델리티 문안에 합의, 작년 5월 개시된 한중 FTA 1단계 협상을 마무리
  - o (상품 분야) 품목군 분류 방식(일반, 민감, 초민감) 및 품목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 자유화 수준에 합의
  - o (서비스·투자 분야) 양측은 높은 수준의 협정을 체결한다는데 합의하고, 서비스 및 투자 분야 협정문 구성 요소에 대해 합의
  - o (규범) 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투명성, 환경 분야를 2단계 협상 대상에 포함키로 하고, 각 분야별로 구성 요소 명시

#### 8 제8차 협상

- □ 일시 및 장소 : 2013. 11.18~22, 인천
- □ 수석대표 : (韓)우태희 FTA교섭대표, (中)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
- □ 주요 결과
  - o (상품 분야) △상품 양허 및 협정문 협상 동시 진행, △원산지, 통관, SPS, TBT, 무역구제 분야는 text 문안 협의
  - o (서비스·투자) 자유화 방식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포함 양측 초안에 대한 의견 교환
  - o (규범) 지재권, 경쟁, 전자상거래, 환경 각 챕터별 양측 초안 설명 및 의견 교환
  - o (경제협력) 산업협력, 농수산협력, 정부조달 각 분야 양측/우리측 초안 내용 설명 및 의견 교환

### 9 제9차 협상

□ 일시 및 장소 : 2014. 1.6~10, 중국 시안

□ 수석대표 : (韓)우태희 FTA교섭대표, (中)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

□ 주요 결과

o 한·중 FTA 제9차 협상시 우리측 양허 개요

	제8차(80%) 교혼	_	제9차(20%) 교환								
구분	일반품목군	민감품목군	:	초민감품목군							
1 4	(Normal Track)	(Sensitive Track)		(Highly Sensitive Track)							
	즉시철폐~	10년이상~	:	양허 제외,							
			:	TRQ, 계절관세,							
처리	10년내 철폐	20년내 철폐		관세부분감축 등							
내용	<del></del>		$\rightarrow$	$\longleftarrow$							
"	70747 504 77 0	00/ 4 010// 717 050/	:	품목수 기준 10%,							
	자유화수준 : 품목수 기준 9 	0%, 수입액 기준 85%		수입액 기준 15%							
주요	■ 석유화학	■기계									
_	(기초 유분, 합성수지 등)	(베어링, 공구 등)		■ 국내 주요생산 농수신물							
품목	■기계 (공작기계 등)	■전기기		■ 영세 중소기업 제품							
예시	•IT (디스플레이, 컴퓨터 등)	(스위치 변환기 등)									

#### 10 제10차 협상

- □ 일시 및 장소 : 2014. 3.17~21, 한국 일산 고양
- □ 수석대표 : (韓)우태희 FTA교섭대표, (中)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
- □ 주요 결과
  - o (상품) 농수산물 및 제조업 관련 양허 수준에 대한 입장차 지속
    - (中) 우리측에 농수산 품목 개방 확대를 요구
    - (韓) 중측에 제조업 분야 조기 관세 철폐 비중 확대를 요구
  - o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 방식 관련 입장 차이 지속
  - o (규범 및 협력) 원산지·통관,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구제, 총칙, 경쟁, 지재권, 환경, 전자상거래, 경제협력 등 여타 분야는 협정문 협상을 지속하여 주요 쟁점 관련 입장차이 축소 중

### 11 제11차 협상

□ 일시 및 장소 : 2014. 5.26~30, 중국 쓰촨성

□ 수석대표 : (韓)우태희 FTA교섭대표, (中)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

#### □ 주요 결과

- o (상품) 작년 12월 1차 양허안 교환 이후 개선된 2차 양허안(offer)을 교환하고, 양측 핵심 관심품목에 대해 2차 양허요구안(request) 교환
  - (中) 우리측에 농수산 품목 개방 확대 요구
  - (韓) 중측에 제조업 분야 조기 관세철폐 비중 확대 지속
- o (서비스·투자) 시장 자유화 방식에 관하여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서비스 분야는 본격적인 양허 협상을 개시
  - 서비스 분야는 1차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의견 교환
- o (규범 및 협력) 협정문 협상에서 많은 진전
  - 경쟁 챕터는 대체적인 합의에 도달, 전자상거래도 일부 기술적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 문안에 대해 합의 도출
  - 원산지, 통관, 환경 등 나머지 규범 분야 및 협력 분야에서도 진전을 이루고, 남은 쟁점 타결을 위해 협상을 가속화하기로 합의

	합의	미합의
경쟁	• 경쟁법 집행 일반원칙, 공기업 경쟁 의무, 경쟁당국간 협력을 포함한 전체 협정문	• 중측 내부 승인절차 필요
전자상거래	• 전자적 전송 무관세, 개인정보 보호	• 정의 규정, 별도챕터
경제협력	• 산업협력(ICT, 철강 등), 정부조달, 산림협력	• 농수산협력 등
원산지	• 원산지 판정 기본원칙 및 세부 요소	•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 등
지재권	• 상표권, 디자인, 지리적 표시(GI), 집행	• 저작권, 특허, 실용신안 등에 대한 보호수준
환경	• 목적, 환경보호수준제고의무, 환경영향평가	• 위원회, 협력사업 등
기술장벽(TBT)	• 목적, 기술규정과 국제표준과의 조화	• 시험인증절차 간소화,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등
위생검역(SPS)	• 독립챕터	• 지역화 등 대다수 분야

#### 12 제12차 협상

□ 일시 및 장소 : 2014. 7.14~18, 대구 EXCO

□ 수석대표 : (韓)우태희 FTA교섭대표, (中)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

#### □ 주요 결과

- o (상품) 양측은 중측 제조업 조기관세철폐 기간, 우리측 농수산물 민감성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의견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
  - 관세철폐 대상품목에 대한 관세철폐기간(staging) 논의 개시
- o (서비스·투자) 그동안 가장 큰 쟁점이었던 자유화방식(韓 네거티브 vs. 中 포지티브)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도출
  - 협정 발효시에는 포지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양허를 채택하되, 후속 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의 협정문 및 유보로 전환키로 합의

분야	발효시		후속 협상
서비스	협정문 및 양허(포지티브 방식)	<b>→</b>	협정문 및 유보(네거티브 방식)
투 자	협정문(투자보호와 투자자유화 약속)		협정문 및 유보(네거티브 방식)

- \* 중국은 제18기 3중전회('13.11월)에서 네거티브 방식 채택 천명
- \*\* 중국이 양자 FTA에서 네거티브 방식에 합의한 것은 한-중 FTA가 최초
- o (규범 및 협력) 협정문 협상에서 많은 진전
  - 경쟁, 전자상거래 챕터는 완전 타결, 환경 챕터는 문안 대부분 타결
  - 지재권, 통관절차, 경제협력, 정부조달, SPS, TBT 등 분야는 핵심 쟁점 상당 부분 타결

### 13 제13차 협상

□ 일시 및 장소 : 2014. 9.22~26, 중국 베이징

□ 수석대표 : (韓)우태희 FTA교섭대표, (中)왕셔우원 상무부 부장조리

#### □ 주요 결과

o (상품) 양측은 상품 협상의 최종 타결 목표에 대한 집중 협의를 진행, 잠정 종합 패키지(안)을 교환

- ① 중측 일반품목군/즉철 비중 ② 우리측 농수산 자유화율 이슈
- ③ NT/ST 관세철폐기간 ④ 초민감품목 처리방안을 포함
- o (서비스·투자) 2차 양허요구안(Request)에 대한 상호 입장을 교환
  - 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
  - 특히,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3개 분야를 독립 章(챕터)으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여 한-중 FTA 협상 논의 분야가 전체 22개 章으로 확대
    - \* 한국의 기체결 FTA와의 비교 : 한-미 FTA(24개 章). 한-EU FTA(15개 章)
- o (규범 및 협력) 'SPS(위생·검역)', '최종 규정' 章이 문안 합의되어, 旣 합의된 경쟁, 전자상거래와 더불어 현재까지 총 4개 章이 타결
  - 통관 및 무역원활화, TBT(무역기술장벽),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 해결 등 분야는 잔여 쟁점을 최소화하여 타결에 근접
    - \* 통관 분야의 경우, 700불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에 합의

## 참 고 2 한·중 FTA 관련 각종 참고자료

### 1. 공산품 양허 현황

품=	띿	韓	中		
	즉 시 철 폐	(5,823개, 414.9억불) 원유, 나프타, 음향기기, 반도체제조 장비, 의약품 등	(1,258개, 733.4억불) 항공등유, L형강, 스텐레스열연강 판(3mm미만) 등		
일 반 ·	5 년 내	(1,113개, 30.3억불) 제트유, 플라스틱 제품, 금속절삭 기계, 의료기기 등	(1,589개, 58.2억불) 항공기 부품, 유선통신기기 부품, 반도체제조장비 등		
N T	10 년 내	(1,900개, 165.7억불) 차체 <del>부분품</del> , 냉장고, 세탁기, 화장품, LCD 패널 등	(1,849개, 311.6억불) 에틸렌, 프로필렌, 충격흡수장치, 냉연강판(0.5-1mm), 도금강판(클래드), 냉장고, 에어컨, 밥솥, 믹서, 여성 코트 및 자켓, 유아복, 헤어핀, 기타 운동기구, LCD 패널 등		
민 감	15 년 내	(579개, 76.9억불) 휘발유, 기어박스, 타이어 등	(840개, 218.4억불)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기유, 프레스 금형기계, TV카메라 부품, 안경렌즈 등		
S T	20 년 내	(12개, 26.8억불) 축전기, 편직제 의류 등	(369개, 92.2불) ABS수지, 도료, 차량용 축전지, 브레 이크, 가정용 정수기, 콘텍트렌즈 등		
초 민 감	부(37개, 17.6억불)분안전유리, 알루미늄박, 면직감감신발부분품 등축		(128개, 99.9억불) 리튬이온축전지, 자동기어변속장치, 차체부분품, 선박용 엔진, 음향기기 부품, 스킨케어 화장품, 샴푸, 린스 등		
· H S T	양 허 제 외	(210개, 28억불) 초산에틸, 판유리, 자동차, 면사, 모사, 편직제의류, 베어링 등	(509개, 147.3억불) 파라자일렌(PX), 텔레프탈산(TPA), 에틸렌 글리콜(EG), 자동차,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냉연강판(합금강), 굴삭기, 레이저프린터 등		

※ 상기 품목은 카테고리별 대표 품목으로서, HS 코드별 구체 양허는 상이할 수 있음.

## 2. 우리 농수산물 양허 현황

품 5	락군	주요 품목
협정	제 외	(16개, 0.8억불) 쌀
초민감	양허제외	(596개, 9.9억불) 양념채소(고추, 마늘, 양파, 생강), <b>밭작물</b> (배추, 당근, 무, 오이, 가지), 인삼류, 과일(사과, 배, 포도, 감귤, 감, 딸기, 수박, 복숭아), 견과류(밤, 호두, 잣, 대추, 은행), 가공식품(간장, 된장, 고추장, 메주, 대두유, 설탕, 전분), 조기(냉동), 갈치(냉동) 등 우리 주요 농수산 품목
HST	TRQ	(21개, 5.7억불) 대두, 참깨, 팥, 고구마전분, 기타사료, 맥아, 낙지(냉동), 아귀(냉동) 등 대중 수입 불가피 품목
	부분감축	(35개, 4.9억불) 김치, 기타 소스, 혼합조미료, 조제땅콩, 들깨, 조제 팥, 꽃게(냉동), 복어(냉동) 등 국내 산업 보호 필요 품목
민감 · ST	20년내철폐	(870개, 7.99억불) 산동물(말, 양), 육고기(거위, 기니아새), 가공식품(토마토케첩, 카레, 마가린, 아이스크림), 소주, 맥주, 연육, 새우살(냉동) 등 장기간 보호 필요 품목
일 반 · NT	10년내철폐	(702개, 6.2억불) 박류, 수수, 사료, 모류, 쿠키 및 크래커, 라면, 치어, 연어, 패각 등 저율관세 품목, 수입의존 품목 등

#### 3. 비관세장벽(NTB) 주요내용

#### □ 실체적 내용(의무규정)

- ① (상품) 비관세조치 신규 도입 시 공표와 시행 전 유예기간 부여
- ② (상품) 식품, 화장품 등 분야 시험검사기관 상호인정 관련 협의
  - ※ 우리는 국내외 민간 검사기관의 식의약품 검사성적서를 인정하여 수입시 이를 고려하고 있으나 중국은 외국 시험기관의 검사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중국에서 검사를 받게 함에 따라 통관지연 등 애로사항 발생
- ③ (상품) 수입허가 관련 신규/수정 조치 공표 의무, 미공표시 적용 제한
- ④ (TBT) 국제공인성적서 상호 수용 촉진(전기용품), 시험성적서 상호 수용 협상 개시(전기용품, 자동차 부품), 허가 신청 절차에서의 내국민대우 부여(화장품, 의약품) 등
- ⑤ (통관) 지역세관간 일관적인 세관집행 확보, 도착 후 48시간 내 반출원칙, 부두직통관제, 자동화, 위험관리시스템의 적용, 특송 화물 서류 최소화 등 절차 간소화, 사후심사원칙

#### □ 기능적 내용(메커니즘)

- o (협의 절차) 상품위원회 및 상품작업반 산하 비관세조치 작업반 설치
  - 상품위원회 : 비관세조치 적용 관련 사항 논의 및 비관세조치 작업반 감독
  - 비관세조치 작업반 : 비관세조치에 특정한 협의 기구
- o (중개 절차) 분쟁해결챕터 내에 비관세장벽 해소를 위한 "중개 (Mediation) 절차" 장려 조항 포함
  - 양측은 중개인의 도움을 통하여 합리적 기간 내 신속한 방식으로 상호 동의할 만한 해결책 모색 노력, 해결책 이행 위한 조치 의무
- o (투자 애로해소 담당기관 지정)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중국 정부내 담당기관(중앙·성 단위) 지정

#### 4. 한·중 FTA 추진 프로세스

민간 공동연구

('05.7월~'06.9월)

Д

산·관·학 공동연구

('07.3월~'10.5월)

 $\hat{\mathbf{U}}$ 

정부 간 사전 실무협의

('10.9월 ~ '12.4월)

 $\sqrt{1}$ 

한중 FTA 공청회('12.2월)

Ţ

한중 FTA 추진계획 국회 보고

('12.4월)

Ţ

**1단계 협상**('12.5월~'13.9월)

1차('12.5월 베이징), 2차('12.7월 제주), 3차('12.8월 웨이하이), 4차('12.10월 경주), 5차('13.4월 하얼빈), 6차('13.7월 부산), 7차('13.9월 웨이팡)

 $\hat{\mathbb{U}}$ 

**2단계 협상**('13.11월~'14.11월)

8차('13.11월 인천), 9차('14.1월 시안), 10차('14.3월 고양), 11차('14.5월 메이샨), 12차('14.7월 대구), 13차('14.9월 베이징), 14차('14.11월 베이징) 2단계 협상 완료(협상 타결)

 $\sqrt{ }$ 

협정문안 확정 / 가서명

Д

협정문 번역 / 법제처 심의

 $\hat{\mathbf{U}}$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sqrt{ }$ 

정식 서명

Д

협상 결과 국회 보고

Д

국회 비준 동의

 $\sqrt{ }$ 

협정 발효

### 참 고 3

### 한·중 교역 주요통계

### 1 개 황

### 가. 거시경제지표

구	년 도	한 국	중 국	비고	
국내총생산(명·	목GDP, 억불)		13,043	91,814	중국, 한국의 7배 중국(세계 2위), 한국(세계 15위)
1인당 GDP(명	목, 불) <sup>1」</sup>	2013	25,973	6,747	중국(세계 84위), 한국(세계 33위)
경제성장률(실	질, %) <sup>1」</sup>		3.0	7.7	-
인 구(만명)		2013	5,114	136,072	중국, 한국의 27배 중국(세계 1위), 한국(세계 26위) ☆ 전세계 인구: 70억 명
국토면적(만km	국토면적(만km²)		10	960	중국, 한국의 96배 중국(세계 4위), 한국(세계 109위)
	총액		10,752	41,600	중국 1위, 한국 9위
對세계 상 품	수출	2013	5,596	22,096	중국 1위, 한국 7위
상 품 교 역 (억불) <sup>2</sup>	수입	2013	5,156	19,504	중국 2위, 한국 9위
	수지		440	2,592	중국 2위, 한국 12위
	총액		2,177	5,361	중국 4위, 한국 15위
對세계 서비스	수출	2012	1,118	2,070	중국 5위, 한국 13위
교 역 (억불) <sup>2</sup>	수입	2013	1,059	3,291	중국 2위, 한국 13위
	수지		59	△1,221	중국 125위, 한국 25위

<sup>\*</sup> 자료: WTO, IMF, 통계청, 한국은행, 중국국가통계국

<sup>\* 1」</sup>한국은 한국은행, 중국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2014)

<sup>2</sup>\_ WTO, International Trade and Market Access D/B

### 나. 산업별 대중 교역통계

### □ 연도별 수출입 현황 및 수지

[단위: 억불, 증가율(%)]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연도	對세계	對中	중국 수출 비중	對세계	對中	중입 수입 등	對세계	對中	
2001	1,504(△127)	182(△1.4)	12.1%	1,411(\(\triangle\)12.1)	133( 3.9)	9.4%	93	49	
2002	1,625( 8.0)	238(30.6)	14.6%	1,521( 7.8)	174(30.8)	11.4%	103	64	
2003	1,938(19.3)	351(47.8)	18.1%	1,788(17.6)	219(25.9)	12.3%	150	132	
2004	2,538(31.0)	498(41.7)	19.6%	2,245(25.5)	296(35.0)	13.2%	294	202	
2005	2,844(12.0)	619(24.4)	21.8%	2,612(16.4)	386(30.6)	14.8%	232	233	
2006	3,255(14.4)	695(12.2)	21.3%	3,094(18.4)	486(25.6)	15.7%	161	209	
2007	3,715(14.1)	820(18.0)	22.1%	3,568(15.3)	630(29.8)	17.7%	146	190	
2008	4,220(13.6)	914(11.5)	21.7%	4,353(22.0)	769(22.1)	17.7%	△133	145	
2009	3,635(△13.9)	867(△5.1)	23.9%	3,231(△25.8)	542(△29.5)	16.8%	404	325	
2010	4,664(28.3)	1,168(34.8)	25.1%	4,252(31.6)	716(31.9)	16.8%	412	453	
2011	5,552(19.0)	1,342(14.9)	24.2%	5,244(23.3)	864(20.8)	16.5%	308	478	
2012	5,478(△1.3)	1,343(0.1)	24.5%	<i>5,</i> 196(△0.9)	808(△6.5)	15.5%	282	535	
2013	5,596(2.1)	1,458(8.6)	26.1%	5,156(△0.8)	830(2.8)	16.1%	440	628	
'14년 上	2,833(2.5)	694(△0.1)	<i>24.5%</i>	2,631(2.6)	438(6.9)	16.6%	202	256	

\*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3년 중국은 제1의 교역파트너 (수출순위: 中→美→日, 수입순위: 中→日→美)



## □ 대중 교역량 비중

(단위 : 억불)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년 上
전체 교역량(A)	6,349	7,283	8,573	6,866	8,916	10,796	10,676	10,752	5,456
대중국 교역량(B)	1,181	1,450	1,683	1,409	1,884	2,206	2,152	2,288	1,177
비중(B/A)	18.6%	19.9%	19.6%	20.5%	21.1%	20.4%	20.2%	21.3%	21.5%

\* 자료: 한국무역협회

### □ 품목군별 교역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2012							2013					
十七	공산품	농산물	축물	分置	암물	합체	광품	농산물	<b></b>	<b>分</b> 暨	암물	합계		
교역액	1,029,231	22,569	5,444	6,127	4,083	1,067,454	1,086,653	22,894	5,728	5,812	4,130	1,075,218		
(對中)	(209,770)	(3,037)	(261)	(1,417)	(622)	(215,107)	(223,087)	(3,443)	(367)	(1,351)	(674)	(228,922)		
(비중)	(20.4)	(13.5)	(4.8)	(23.1)	(15.2)	(20.2)	(21.5)	(15.0)	(6.4)	(23.2)	(16.3)	(21.3)		
수출	540,656	4,216	536	2,350	111	547,870	552,510	4,160	722	2,137	104	559,632		
(對中)	(133,228)	(629)	(86)	(370)	(10)	(134,323)	(144,718)	(645)	(131)	(367)	(8)	(145,869)		
(비중)	(246)	(14.9)	(16.1)	(15.7)	(9.3)	(24.5)	(26.2)	(15.5)	(18.1)	(17.2)	(7.4)	(26.1)		
수입	488,575	18,353	4,908	3,777	3,972	519,584	484,143	18,734	5,007	3,675	4,026	515,586		
(對中)	(76,543)	(2,409)	(174)	(1,047)	(612)	(80,785)	(78,368)	(2,798)	(236)	(984)	(666)	(83,053)		
(비중)	(15.7)	(13.1)	(3.6)	(27.7)	(15.4)	(15.5)	(16.2)	(14.9)	(47)	(26.8)	(16.6)	(16.1)		
수지	52,081	△14,136	<b>△4,37</b> 2	△1,427	△3,860	28,285	68,367	△14,574	△4,285	△1,538	△3,922	44,047		
對中	56,685	41,780	488	<i>4678</i>	<i>4601</i>	53,538	66,350	<i>42,153</i>	<i>Δ105</i>	<i>\\ \\ \\ \\ \\ \\ \\ \\ \\ \\ \\ \\ \\ </i>	459	62,817		

7.14			'14년	上		
구분	공산품	농산물	축물	分置	암물	합계
교역액	526,428	11,573	3,212	3,044	2,180	546,437
(對中)	(110,395)	(1,594)	(208)	(720)	(357)	(113,274)
(비중)	(21.0)	(13.8)	(6.5)	(23.7)	(16.4)	(20.7)
수출	279,738	2,161	364	1,001	60	283,324
(對中)	(68,918)	(300)	(66)	(152)	(5)	(69,441)
(भीह)	(24.6)	(13.9)	(18.1)	(15.2)	(8.3)	(24.5)
수입	246,690	9,412	2,848	2,043	2,120	263,113
(對中)	(41,477)	(1,294)	(142)	(568)	(352)	(43,833)
(मीर्ह)	(16.8)	(13.7)	(5.0)	(27.8)	(16.6)	(16.7)
수지	33,048	<i>47,2</i> 51	<b>△2,48</b> 4	△1,012	<b>42,06</b> 0	20,211
對中	27,441	△994	△76	△416	△347	25,608

\* 자료: 한국무역협회

### □ 제조업 분야 대중 교역현황

### ① 공산품(전체)

(단위 : 백만불)

H			20	12			20	13	
구분		교역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교역액	수출	수입	무역수지
	세계	1,029,231	540,656	488,575	52,081	1,036,653	552,510	484,143	68,367
공산품	對中	209,770	133,226	76,544	56,682	223,085	144,717	78,368	66,349
	(비중)	(20.4)	(24.6)	(15.7)		(21.5)	(26.2)	(16.2)	
	세계	271,489	62,700	208,789	△146,089	256,952	56,931	200,021	△143,090
광산물	對中	12,910	10,496	2,414	8,082	10,978	8,711	2,267	6,444
	(비중)	(4.8)	(16.7)	(1.2)		(4.3)	(15.3)	(1.1)	
최 치.	세계	117,519	65,289	52,230	13,059	121,636	69,166	52,470	16,696
화학 공업제품	對中	35,069	25,977	9,092	16,885	37,853	28,209	9,644	18,565
O H-11-D	(비중)	(29.8)	(39.8)	(17.4)		(31.1)	(40.8)	(18.4)	
	세계	23,777	14,621	9,156	5,465	24,224	15,398	8,826	6,572
플라스틱, 고무, 기 <del>죽</del>	對中	4,456	2,965	1,491	1,474	5,036	3,483	1,553	1,930
<b>业市</b> /15	(비중)	(18.7)	(20.3)	(16.3)		(20.8)	(226)	(17.6)	
	세계	27,584	15,595	11,989	3,606	29,475	15,955	13,520	2,435
섬유	對中	8,555	2,725	5,830	△3,105	9,052	2,730	6,322	△3,592
	(비중)	(31.0)	(17.5)	(48.6)		(30.7)	(17.1)	(46.8)	
भी हो.	세계	10,041	3,462	6,579	△3,117	10,943	3 <i>,7</i> 83	7,160	△3,377
생활 용품	對中	4,162	<i>67</i> 0	3,492	△2,822	4,435	738	3,697	△2,959
<u> </u>	(비중)	(41.5)	(19.4)	(53.1)		(40.5)	(19.5)	(51.6)	
·리 기.	세계	94,653	47,420	47,233	187	87,705	43,414	44,291	△877
철강 금속	對中	20,931	7,865	13,066	△5,201	19,827	7,644	12,183	△4,539
цЧ	(비중)	(221)	(16.6)	(27.7)		(226)	(17.6)	(27.5)	
	세계	227,932	165,103	62,829	102,274	229,322	165,820	63,502	102,318
기계류	對中	27,951	19,292	8,659	10,633	31,252	22,774	8,478	14,296
	(비중)	(123)	(11.7)	(13.8)		(13.6)	(13.7)	(13.4)	
그리 그리	세계	252,303	164,615	87,688	76,927	272,345	180,157	92,188	87,969
전자 전기	對中	95,323	63,108	32,215	30,893	104,253	70,298	33,955	36,343
	(비중)	(37.8)	(38.3)	(36.7)		(38.3)	(39.0)	(36.8)	
	세계	3,933	1,851	2,082	△231	4,051	1,886	2,165	△ <b>27</b> 9
잡제품	對中	413	128	285	△157	399	130	269	△139
	(비중)	(10.5)	(6.9)	(13.7)		(9.8)	(6.9)	(124)	

<sup>\*</sup>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1단위 기준)

### ② 자동차

### 〈금액기준〉

(단위: 백만불,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년 上
수출	48,635	12,602	35,411	45,312	47,201	48,635	25,472
對中	954	886	1,582	2,343	1,531	1,747	807
(비중)	(2.0)	(7.0)	(4.5)	(5.2)	(3.2)	(3.6)	(3.2)
수입	3,297	2,490	3,540	4,268	5,239	6,334	4,103
對中	39	32	26	31	35	45	24
(비중)	(1.2)	(1.3)	(0.7)	(0.7)	(0.7)	(0.7)	(0.6)
교역액	51,932	15,092	38,951	49,580	52,440	54,969	29,575
對中	993	918	1,608	2,374	1,566	1,792	831
(비중)	(1.9)	(6.1)	(4.1)	(4.8)	(3.0)	(3.3)	(2.8)
무역수지	45,338	10,112	31,871	41,044	41,962	42,301	21,369
對中	915	854	1,556	2,312	1,496	1,702	783

\*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741 기준)

### 〈수량기준〉

(단위: 대)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2,683,965	2,148,862	2,772,107	3,151,708	3,170,634	3,089,283
對中	51,858	50,737	88,395	128,802	82,338	91,493
(비중)	(1.9)	(2.4)	(3.2)	(4.1)	(2.6)	(3.0)
수입	80,537	69,002	104,977	117,592	154,407	191,066
對中	144	159	169	174	215	401
(비중)	(0.2)	(0.2)	(0.2)	(0.1)	(0.1)	(0.2)
해외생산	1,457,268	1,901,721	2,604,762	3,140,683	3,635,467	4,108,055
중국생산	438,988	814,852	1,043,307	1,176,404	1,342,887	1,591,024
(비중)	(30.1)	(42.8)	(40.1)	(37.5)	(36.9)	(38.7)

\* 자료: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승용차 분류 기준: HS 8703(8703.10 제외)

### ③ 자동차 부품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년 上
 수출	26,079	6,595	18,963	23,088	24,610	26,079	13,403
對中	1,945	2,662	3,783	4,401	4,458	5 <b>,</b> 570	3,032
(비중)	(7.5)	(40.4)	(19.9)	(19.1)	(18.1)	(21.4)	(22.6)
수입	4,348	3,379	4,948	5,837	4,919	4,888	2,413
對中	776	692	1,118	1,373	1,299	1,417	647
(비중)	(17.8)	(20.5)	(22.6)	(23.5)	(26.4)	(29.0)	(26.8)
교역액	30,427	9,974	23,911	28,925	29,529	30,967	15,816
對中	2,721	3,354	4,901	5,774	5,757	6,987	3,679
(비중)	(8.9)	(33.6)	(20.5)	(20.0)	(19.5)	(22.6)	(23.3)
무역수지	21,731	3,216	14,015	17,251	19,691	21,191	10,990
對中 對中	1,169	1,970	2,665	3,028	3,159	4,153	2,385

\*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742 기준)

### **④ 철강**

(단위 : 백만불, %)

						•	· · · · · · · · · · · · · · · · · ·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년 上
수출	29,865	23,029	28,875	38,484	36,971	32,497	17,448
對中	4,406	4,518	4,622	5,178	4,375	4,499	2,438
(비중)	(14.8)	(19.6)	(16.0)	(13.5)	(11.8)	(13.8)	(14.0)
수입	41,411	23,979	30,840	35,003	30,818	27,994	15,233
對中	17,011	6,876	9,319	12,144	11,051	9,979	5,997
(비중)	(41.1)	(28.7)	(30.2)	(34.7)	(35.9)	(35.6)	(39.4)
교역액	71,276	47,008	59 <i>,</i> 715	73,487	67,789	60,491	32,681
對中	21,417	11,394	13,941	17,322	15,426	14,478	8,435
(비중)	(30.0)	(24.2)	(23.3)	(23.6)	(22.8)	(23.9)	(25.8)
무역수지	△11,546	△950	1,965	3,481	6,153	4,503	2,215
對中	△12,605	△ <b>2,</b> 358	△4 <b>,</b> 697	△6,966	△6,676	△5,480	△3,559

\*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61 기준)

### ⑤ 비철금속

(단위 : 백만불,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년 上
수출	8,325	6,175	8,494	9,934	9,150	9,469	4,399
對中	2,787	2,358	2,933	3,343	3,213	2,852	1,049
(비중)	(33.5)	(38.2)	(34.5)	(33.7)	(35.1)	(30.1)	(23.8)
수입	15,142	10,326	14,601	17,865	15,557	15,304	7,646
對中	2,778	1,011	1,416	2,138	1,552	1,679	883
(비중)	(18.3)	(9.8)	(9.7)	(12.0)	(10.0)	(11.0)	(11.5)
교역액	23,467	16,501	23,095	27,799	24,707	24,773	12,045
對中	5,565	3,369	4,349	5,481	4,765	4,531	1,932
(비중)	(23.7)	(20.4)	(18.8)	(19.7)	(19.3)	(18.3)	(16.0)
무역수지	△6,817	△4,151	△6,107	△7,931	△6,407	△5,835	△3,247
對中	9	1,347	1,517	1,205	1,661	1,173	166

\*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62 기준)

### ⑥ 전자전기

(단위: 백만불,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년 上
 수출	131,910	126,014	159,897	164,211	164,615	180,157	88,565
對中	35,795	40,194	55,311	57 <i>,</i> 751	63,108	70,298	34,290
(비중)	(27.1)	(31.9)	(34.6)	(35.1)	(38.3)	(39.0)	(38.7)
수입	80,444	67,962	83,125	90,725	87,688	92,188	46,601
對中	26,179	22,520	29,947	34,669	32,215	33,955	17 <i>,</i> 772
(비중)	(32.5)	(33.1)	(36.0)	(38.2)	(36.7)	(36.8)	(38.1)
교역액	212,354	193,976	243,022	254,936	252,303	272,345	135,166
對中	61,974	62,714	85,258	92,240	95,323	104,253	52,062
(비중)	(29.2)	(32.3)	(35.1)	(36.2)	(37.8)	(38.3)	(38.5)
무역수지	51,466	58,052	76,772	73,486	76,927	87,969	41,964
對中	9,616	17,674	25,364	22,902	30,893	36,343	16,518

<sup>\*</sup>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8 기준)

### ⑦ 기계

(단위 : 백만불, %)

						(1.	<u> 게 : 역단물, /0)</u>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년 上
 수출	133,255	112,339	145,430	164,211	165,103	165,820	86,916
對中	15,974	12,603	19,145	22,733	12,292	22,774	10,860
(비중)	(12.0)	(11.2)	(13.2)	(13.8)	(11.7)	(13.7)	(12.5)
수입	51,654	43,059	60,443	64,758	62,829	63,502	32,804
對中	5,697	5,394	6,959	8,106	8,659	8,478	4,494
(비중)	(11.0)	(12.5)	(11.5)	(12.5)	(13.8)	(13.4)	(13.7)
교역액	184,909	155,398	205,873	228,969	227,932	229,322	119,720
對中	21,671	17,997	26,104	30,839	27,951	31,252	15,354
(비중)	(11.7)	(11.6)	(12.7)	(13.5)	(12.3)	(13.6)	(12.8)
무역수지	81,601	69,280	84,987	99,453	102,274	102,318	54,112
對中	10,277	7,209	12,186	14,627	10,633	14,296	6,366

<sup>\*</sup>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7 기준)

### ⑧ 섬유류

(단위: 백만불,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년 上
 수출	13,317	11,634	13,899	15,932	15,595	15,955	8,015
對中	2,623	2,278	2,745	2,990	2,725	2,730	1,254
(비중)	(19.7)	(19.6)	<i>(19.7)</i>	(18.8)	(17.5)	(17.1)	(15.6)
수입	8,800	7,407	9,924	12,628	11,989	13,520	6,378
對中	5,357	4,109	5,378	6,529	5,830	6,322	2,917
(비중)	(60.9)	(55.5)	(54.2)	(51.7)	(48.6)	(46.8)	(45.7)
교역액	22,117	19,041	23,823	28,560	27,584	29,475	14,393
對中	7,980	6,387	8,123	9,519	8,555	9,052	4,171
<i>(비중)</i>	(36.1)	(33.5)	(34.1)	(33.3)	(31.0)	(30.7)	(29.0)
무역수지	4,517	4,227	3,975	3,304	3,606	2,435	1,637
對中	△2,734	△1,831	△2,633	△3,539	△3,105	△3,592	△1,663

<sup>\*</sup>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 기준)

#### ⑨ 생활용품

(단위: 백만불,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년 上
수출	2,575	2,280	2,683	3,081	3,462	3,783	1,765
對中	662	568	627	668	670	738	357
(비중)	(25.7)	(24.9)	(23.4)	(21.7)	(19.4)	(19.5)	(20.2)
수입	4,813	4,033	5,194	6,237	6,579	7,160	3,997
對中	2,569	2,146	2,845	3,346	3,492	3,697	2,042
(비중)	(53.4)	(53.2)	(54.8)	(53.6)	(53.1)	(51.6)	(51.1)
교역액	7,388	6,313	7,877	9,318	10,041	10,943	5,762
對中	3,231	2,714	3,472	4,014	4,162	4,435	2,399
(비중)	(43.7)	(43.0)	(44.1)	(43.1)	(41.5)	(40.5)	(41.6)
무역수지	△2,238	△1,753	△ <b>2,</b> 511	△3,156	△3,117	△3,377	△2,232
對中	△1,907	△1,578	△2,218	△2,678	△2,822	△2,959	△1,685

<sup>\*</sup>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5 기준)

### ⑩ 플라스틱, 고무, 가죽제품

(단위 : 백만불, %)

						( -	11 · 1 · 1 · 1 · 1 · 1 · 1 · 1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년 上
수출	9,340	8,586	11,285	13,532	14,621	15,398	7,811
對中	1,700	1,756	2,362	2,745	2,965	3,483	1,605
(비중)	(18.2)	(20.5)	(20.9)	(20.3)	(20.3)	(22.6)	(20.5)
수입	6,457	6,145	8,469	9,330	9,156	8,826	4,278
對中	1,028	868	1,192	1,492	1,491	1,553	766
(비중)	(15.9)	(14.1)	(14.1)	(16.0)	(16.3)	(17.6)	(17.9)
교역액	15,797	14,731	19,754	22,862	23,777	24,224	12,089
對中	2,728	2,624	3,554	4,237	4,456	5,036	2,371
(비중)	(17.3)	(17.8)	(18.0)	(18.5)	(18.7)	(20.8)	(19.6)
무역수지	2,883	2,441	2,816	4,202	5,465	6,572	3,533
對中	672	888	1,170	1,253	1,474	1,930	839

<sup>\*</sup>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3 기준)

### ① 화학공업제품

(단위: 백만불,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년 上
수출	45,885	39,768	51,624	65,072	65,289	69,166	35,049
對中	17,862	16,820	20,945	26,039	25,977	28,209	13,357
(비중)	(38.9)	(42.3)	(40.6)	(40.0)	(39.8)	(40.8)	(38.1)
수입	41,111	34,256	44,752	52,798	52,230	52,470	26,406
對中	6,369	4,986	6,962	9,356	9,092	9,644	5,053
(비중)	(15.5)	(14.6)	(15.6)	(17.7)	(17.4)	(18.4)	(19.1)
교역액	86,996	74,024	96,376	117,870	117,519	121,636	61,455
對中	24,231	21,806	27,907	35,395	35,069	37,853	18,410
(비중)	(27.9)	(29.5)	(29.0)	(30.0)	(29.8)	(31.1)	(30.0)
무역수지	4,774	5,512	6,872	12,274	13,059	16,696	8,643
對中	11,493	11,834	13,983	16,683	16,885	18,565	8,304

<sup>\*</sup>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2 기준)

### □ 한국의 대중 10대 교역품 현황

(단위: 억불, %, MTI 4단위)

수출품목	금액	비중	수입품목	금액	비중
집적회로반도체 	185	12.7	집적회로반도체	43	17.8
평판디스플레이	180	12.3	기타정밀화학원료	28	3.4
합성수지	77	5.3	배전및제어기	26	3.2
석유화학중간원료	62	4.2	평판디스플레이	26	3.1
자동차부품	56	3.8	컴퓨터	25	3.0
경보신호기	54	3.7	직물제의류	21	2.5
무선통신기기부품	50	3.4	전선	21	2.5
기초유분	45	3.1	개별소자반도체	19	2.3
제트유 및 등유	33	2.3	무선통신기기부품	16	2.0
석유화학합성원료	28	1.9	열연강판	16	1.9
소 계	770	52.8	소 계	241	29.0
전 체	1,459	100	전 체	830	100

\* 자료: 한국무역협회, 관세청

# □ 한·중 투자교류 현황

(단위: 억불, %, 건수)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4년	누계
<b>중 → 한</b> (신고금액)	0.5	11.6	0.7	0.4	3.8	3.4	1.6	4.1	6.5	7.3	4.8	7.8	49.4
(비중,%)	(0.8)	(9.1)	(0.6)	(0.3)	(3.7)	(2.9)	(1.4)	(3.2)	(4.8)	(4.5)	(3.3)	(7.5)	(2.3)
(건수)	(522)	(596)	(672)	(332)	(363)	(389)	(537)	(616)	(405)	(512)	(402)	(233)	(8,446)
한 <b>→ 중</b> (신고금액)	28.8	37.2	36.7	45.3	71.0	49.1	27.3	44.4	47.7	65.3	48.0	19.3	616.2
(비중,%)	(44.3)	(41.5)	(37.9)	(23.3)	(23.7)	(13.3)	(8.8)	(12.9)	(10.5)	(16.5)	(13.7)	(12.5)	(17.1)
(건수)	3,150	4,007	4,658	4,701	4,602	3,309	2,121	2,297	2,208	1,854	1,875	820	48,526
(투자금액)	(18.2)	(24.1)	(28.4)	(34.9)	(53.4)	(38.3)	(22.0)	(36.6)	(36.9)	(36.1)	(50.5)	(15.6)	(451.6)

- \*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출입은행(신고금액기준)
- \* '중→한' 누계는 '65~'13, '한→중' 누계는 '88~'13 누적기준, 비중은 전세계 대비 신고금액 기준
- \* '13년 중→한 투자는 신고금액기준 8위(미→일→몰타→홍콩→룩셈부르크→네덜란드→프랑스→**중국**)
- \* '13년 한→중 투자는 신고금액기준 2위(미→<u>중국</u>→케이만→페루→호주→네덜란드→베트남→홍콩), 투자금액기준 1위(**중국**→미→호주→네덜란드→베트남→홍콩)
- \* 14.6월까지 중→한 투자증가는 제주도 관광레저, 문화컨텐츠(게임산업) 투자에 기인

# □ 한·중 서비스 교역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교역액	24,858	20,173.1	25,588.3	27,210.4	28,379.8	29,256.0
서비스지급	11,697.4	10,500.2	12,362.8	14,097.8	13,577.0	12,882.8
서비스수입	13,160.6	9,672.9	13,225.5	13,112.6	14,802.8	16,373.2
서비스수지	1,463.2	△827.3	862.7	△985.2	1,225.8	3,490.4

\* 자료: 한국은행

# □ 한·중 인적교류 현황

(단위: 만명,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방한 중국인	90	107	117	134	188	222	284	433
(증가율)	(26.3)	(19.2)	(9.3)	(14.9)	(39.7)	(18.4)	(27.8)	(52.5)
(비중)	(14.6)	(16.6)	(17.0)	(17.2)	(21.3)	(22.7)	(25.5)	(35.5)
방중 한국인	392	478	396	320	408	419	407	397
(증가율)	(10.7)	(21.7)	(△17.1)	(△19.3)	(27.5)	(2.7)	(△2.8)	(△2.5)
(비중)	(17.7)	(18.3)	(16.3)	(14.6)	(15.6)	(15.4)	(15.0)	(15.1)

- \* 자료: 한국관광공사, 中국가여유국(國家旅遊局)
- \* 증가율은 전년대비. 비중은 전체 외국인 방문자 대비 구성비
- \* '13년 訪韓 중국인수는 1위(**중국→**일→미→대만→필리핀→홍콩→태국)
- \* '13년 訪中 한국인수는 2위(대만→**한국**→일→러시아→미→말레이시아→몽골)

### □ 한·중 관광수지 현황

(단위: 백만불)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관광수입	945.5	_,	,	,	2,184.8	,	,	,
(비중)	16.5%		14.9%		21.2%	22.1%	25.3%	28.5%
관광지출	2,682.7	2,530.1	2,103.9	2,037.5	2,594.4	2,831.0	2,164.6	2,047.2
(비중)	14.3%	11.5%	11.0%	13.6%		14.2%	10.5%	
수지	△ 1,737.2	△ 1,361.4	△ 652.7	△ 618.5	△ 409.6	△ 73.0	1,232.0	2,015.3

\* 자료: 한국은행, 한국관광공사

# 2 농수산 통계

# 가. 한중 농업교역 현황

#### (1) 경제지표비교

구분	한국	중국	중국/한국(배)
농축산업 생산액(조원, '12년 기준)	44	1,324	30.1
경지면적(만ha, '08기준)	169.8	12,171.6	71.7
농작물 재배면적(만ha)	180	16,228	90
▪ 식량작물	106	11,057	105
▪ 채소류	23	1,964	86
▪ 과일류	15	1,183	77
곡물 생산량(만톤)	477.5	57,120.8	119.6
ALL.	400.4	20,100.1	47.6
■ 쌀	422.4	(자포니카 4,183)	(9.9)
축산물 생산량(만톤)	124.6	7,957.8	63.9
• 쇠고기	21.6	647.5	30.0
<ul><li>돼지고기</li></ul>	57.4	5,053.1	88.0
<ul><li>가금류</li></ul>	45.6	1,708.8	37.5
과일류 생산량(만톤)	245.9	22,768.2	92.6
• 사과	38	3,599	95
• нII	29	1,580	29
▪ 감귤	68	2,944	68
채소류 생산량(만톤)	974.7	67,929.7	69.7

<sup>\*</sup> 자료: KREI(한권으로 보는 중국 농업)

#### (2) 대중국 농수산물 교역

(단위 : 백만불)

구	·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합 계	509	732	1,137	1,095	1,151	523
수 출	농산물	323	438	597	629	645	300
一 室 (A)	축산물	33	47	67	86	131	66
(A)	임산물	11	19	12	10	8	152
	수산물	142	228	461	370	367	5
	합 계	3,079	3,715	4,528	4,242	4,684	2,356
수 입	농산물	1,808	2,135	2,584	2,409	2,798	1,294
т <b>ы</b> (В)	축산물	76	102	170	174	236	142
(D)	임산물	374	430	584	612	666	568
	수산물	821	1,048	1,190	1,047	984	352
무역=	수지 (A-B)	△3,238	△2,983	△3,391	△3,147	△3,533	△1,833

\* 자료 : 한국무역협회(MTI 2단위)

#### (3) 대중국 10대 수출 농산물

(단위 : 천불)

순위	품목명	수	출	순위	품목명	수	출
正刊	古古む	2012	2013	조귀	품극경	2012	2013
1	당류	148,226	134,287	1	기타어류	0E 100	72 055
	(당, 시럽 등)	140,220	154,267	l	(연어, 고등어, 삼치 등)	85,138	73,855
2	낙농품	46,113	71,486	2	오징어	41,185	72,678
	(크림, 치즈 등)	40,110	71,400	3	어란	45,815	34,288
3	음료	50,297	61,308		기타해초류		, , , , , , , , , , , , , , , , , , ,
4	커피류	55,157	55,652	4	(미역, 톳, 조제김 등)	23,344	29,545
5	기타농산가공품	39,473	50,094	5	대구	29,533	25,636
	(유자, 향미용조제품 등)	33,473			기타수산가공품	40.404	04.004
6	사탕과자류	35,487	50,033	6	(염장고등어, 조제해삼 등)	12,484	24,964
7	면류	37,607	45,150	7	명태	32,483	24,213
8	모류	22,827	36,373	8	넙치	4,672	18,794
9	인삼류	29,531	35,676	9	수산물통조림	13,225	13,070
10	빵	37,615	32,912	10	게	28,919	10,598
	(10대 수출 소계)	466,730	542,072		(10대 수출 소계)	289,891	327,641
	농축산물 수출 합계	715,109	776,320		수산물 수출 합계	369,534	367,072

\*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 (4) 대중국 10대 수입 농산물

(단위 : 천불)

순위	품목명	수	입	순위	품목명	수	입
Œ '11	970	2012	2013	正刊	古言る	2012	2013
1	채소류	477,163	464,809	1	낙지	106,807	109,066
2	박류	255,134	408,017	2	조기	126,703	104,818
3	곡류	85,332	300,211	3	새우	81,273	72,315
4	채유종실	174,641	203,544	4	조개	80,558	67,421
5	기타농산가공품	178,531	192,476	5	대구	29,533	25,636
6	모류	109,551	166,931	6	문어	52,108	57,638
7	천연섬유원료	150,595	144,149	7	어육	40,068	47,644
8	사료	113,553	119,733	8	게	51,644	46,199
9	두류	170,834	112,094	9	갈치	63,055	45,908
10	소스류	93,904	85,550	10	뱀장어	110	10,684
	(10대 수입 소계)	1,717,346	2,113,977		(10대 수입 소계)	633,761	578,658
	농축산물 수입 합계	2,582,915	776,320		수산물 수입 합계	1,047,452	984,319

\* 자료: 한국무역협회(MTI 4단위)

# 나. 한중 농산물 관세율 비교(2012년 기준)

HSK Chapter	품목	중국(A)	한국(B)
01	산동물	5.6	20.9
02	육과 식용설육	18.8	22.5
04	낙농품, 조란, 천연꿀	14.6	56.2
05	기타 동물성 생산품	12.4	9.4
06	산수목, 꽃	8.6	11.2
07	채소	10.9	115.8
08	과실, 견과류	18.3	68.7
09	커피, 차, 향신료	13.2	81.4
10	곡물	28.5	215.4
11	곡물의 분과 조분밀가루, 전분	25.9	286.9
12	채유용 종자, 인삼	8.7	110.3
13	식물성 엑스	12.2	103.2
14	기타 식물성 생산품	9.4	5.0
15	동식물성 유지	13.0	14.0
16	육·어류 조제품	15.1	32.6
17	당류, 설탕과자	30.9	18.0
18	코코아, 초코렛	11.0	10.5
19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19.1	11.4
20	채소, 과실의 조제품	20.5	34.3
21	기타의 조제식료품	21.4	35.8
22	음료, 주류, 식초	21.6	21.1
23	조제사료	5.5	11.9
24	담배	29.4	31.3
28	무기화합물	5.5	14.0
29	유기화합물	11.0	8.0
33	향료, 화장품	18.8	35.8
35	카세인, 알부민, 변성전분, 효소	10.6	104.2
38	각종 화학공업생산품	12.0	8.0
41	원피, 가축	8.5	0.0
43	모피, 모피제품	19.3	3.0
50	견, 견사, 견직물	8.5	18.0
51	양모, 수모	20.2	0.0
52	면, 면사, 면직물	22.0	0.0
53	마류의 사와 직물	6.0	2.0
농산물 전체 평균		15.0	56.7

# 제4부 Q&A

# 차 례

< /	H 산 >
1.	한중 FTA 실질타결 선언에 대한 평가는?78
2	향후 계획은? 한중 FTA는 언제 발효가 되는지?78
3	한중 FTA 타결로 기대되는 효과는?79
< 성	}품 >
4	상품 분야 주요 내용 및 성과는?80
5.	한중 FTA 체결로 대표적인 수혜분야 및 품목은?81
6.	한중 FTA 실질 타결 선언 이후, 공산품 관련 양허 내용이 미흡
	하다는데?82
7.	자동차가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배경은?83
8.	한중 FTA 체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84
9.	중국내 비관세장벽 해결책은?85
10.	우리 농수산물 보호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지?86
11.	국내 농산물 보호 안전장치인 세이프가드 포함 여부? 87
12.	농업분야 상품협상의 주요 결과 및 성과는?88
13.	김치의 대중국 시장 진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89
14.	한중 FTA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산분야는? · 90
15.	기체결 FTA와 비교할 때, 한중 FTA 농산수산물 분야 협상
	결과는 어떠한가? 90

< 상품관련 규범 분야 >
16. 원산지 결정기준(PSR) 최종 협상의 결과는? ······91
17.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원산지/통관절차나 소요시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92
18. 개성공단 관련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93
< 서비스 및 투자 분야 >
19. 서비스·투자 협상은 후속협상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하기로 약속했는데, 그 의의는?94
20. 서비스 시장개방 수준은? 95
21.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장치가 서비스 협상에 포함
되었는지?96
22. 자연인의 이동 분야의 전반적인 협상 성과는 무엇인지? 97
23. 금융 분야의 협상 성과는 무엇인지?98
24. 통신 분야의 협상 성과는 무엇인지?99
< 규범 및 협력 분야 >
25. 경쟁 챕터의 의의와 주요내용은?100
26. 지재권 협상 주요 내용 및 의의는?101
27. 저작권의 경우 한미 FTA와 한·EU FTA는 사후 70년간 보장
하도록 했지만, 한중 FTA는 50년으로 체결했고 의료·제약 관련
특허는 특허심사기간을 제외한 20년으로 한정했다고 하는데? 102

28.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반적인 협상 결과는 무엇인지?	103
29.	한중 FTA 환경챕터의 목적과 주요내용은?	104
30.	경제협력 분야의 전반적인 성과는?	105
31.	정부조달 챕터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1	106

### [개관]

#### 1 한중 FTA 실질타결 선언에 대한 평가는?

- □ 금번 정상회담시 그간 상호 이견이 지속되었던 핵심 쟁점들에 대해 양국 간 합의가 도출되면서, 상품, 서비스·투자, 및 기타 규범·협력 분야 전체에 걸쳐 협상 마무리에 준하는 수준의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 o 이로써 일부 기술적인 잔여 쟁점들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협상이 완전히 타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 2 향후 계획은? 한중 FTA는 언제 발효가 되는지?

- □ 12월중 잔여 문안 정리 등 기술 협의와 법률 검토를 완료하여 금년말(또는 내년초)까지 가서명을 하고 나면, 협정문 번역,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정식 서명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를 국회에 보고하여 비준 동의를 받으면 정식 발효하게 됩니다.
  - \* 협상 실질 타결 이후 발효까지의 절차 협상 실질 타결 →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 가서명 → 협정문 번역 → 법제처 심의 → 차관회의 → 국무회의 → 대통령 재가 → 정식 서명 → 협상 결과 국회 보고 → 국회 비준동의 → 발효

#### 3 한중 FTA 타결로 기대되는 효과는?

- □ 한중 FTA 체결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습니다.
  - ① 중국 내수시장 선점을 통한 미래 성장동력 확보
  - ② 중국 내 우리 기업 및 국민의 이익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
  - ③ 외국인의 국내투자 증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중국과의 FTA로 중국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 국내 유입 기대
  - ④ EU, 미국에 이어 중국과의 FTA 체결로 글로벌 FTA 허브국가 완성

# [ 상품 ]

#### 4 상품 분야 주요 내용 및 성과는?

- □ 양측은 지난 1단계 협상시 합의한 모델리티(기본협상지침)를 초과한 상품 자유화율을 달성하였습니다.
  - \* 중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0.7%, 수입액 기준 85%, 우리측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92.1%, 수입액 기준 91.2%
  - o 중국의 전체 품목 91%(수입액 85%)에 대한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됨에 따라, **국내 수출업체의 전반적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중국 내 수입시장에서 우리의 주요 경쟁국인 대만, 미국, 독일, 일본 등에 비해 유리한 조건 선점
- □ 농수산 자유화율(즉시철폐~20년내 철폐)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서 기체결 FTA 역대 최저 수준(10개국 평균 품목수 78.1%, 수입액 89%)으로 우리 농수산 시장을 보호하였습니다.
  - o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 (사과, 감귤, 배 등) 등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차단** 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 철강(냉연강판, 스텐레스 열연강판, 중후판), 기계류(건설중장비·펌프 부품, 플라스틱 금형) 등 우리 기존 수출 주력 품목과 고부가가치 생활가전 (믹서기, 전기 밥솥, 에어컨, 냉장고 등), 패션 기능성 의류, 의료기기 등 최종 소비재에 대한 중측 관세철폐 확보로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 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됩니다.
  - o 대중 유관세 수출 품목 상위 100개 품목 중 26개 품목\*에 대한 10년내 관세 철폐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 제트유 등 석유제품, 광학렌즈 및 광학기기부품(편광재료 판), 에틸렌 및 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기초 유분, 유선전화기 부품 및 기타 무선통신기기 부품, 냉연강판 및 중후판, 엔진 부품 등

#### 5 한중 FTA 체결로 대표적인 수혜분야 및 품목은?

- □ 대중 수출 공략 품목으로서 철강, 기계류 및 패션기능성의류, 가전, 의료기기 등 최종 소비재 및 관련 부품 분야에서 중측의 관세철폐를 확보하여 급성장세인 중국 내수시장 진출 기회가 확대됩니다.
  - o (철강) 냉연강판, 스텐레스 열연강판, 조선용 중후판, 형강 등 현지 공장 납품 품목을 포함한 우리 수출 품목
  - o (기계) 금형 및 기계부품 등 현지 공장 납품 품목 및 고급 식품포장기계 및 농기계 등 향후 수요 확대 예상 품목
  - o (전자전기) 믹서기, 전기 밥솥,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진공 청소기 등 중소형 생활가전, 치과용 X레이 기기, 마사지기기 등 의료기기
  - o (섬유) 직물류, 기능성 의류(아웃도어), 유아복, 기타 정장류· 캐주얼 의류
  - o (농수산) 라면, 혼합조미료, 비스킷, 음료 등 농산물 및 김, 미역, 전복, 해삼 등 대중 전략 수출 수산물

- 한중 FTA 실질타결 선언이후, 공산품 관련 양허내용 발표가 미흡하다는데?
- □ FTA 절차상 전체 품목에 대한 양허 내용을 담고 있는 양허표를 공개가능한 시점은 한중 양측간 교환한 양허안에 대한 검증이 완료되는 가서명 (연말 예상) 이후라는 현실적 한계가 있습니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중 FTA 타결 후 현재까지 가능한 범위내에서 상품양허목록 및 도표를 공개하였는데, 이는 한-미 FTA 등 타 FTA 보도자료에 비해 매우 자세한 수준입니다.
  - o 참고로, 한미 FTA 타결당시 보도자료\*에는 10개의 품목만을 추가적인 정보제공없이 언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 \* '특히 <u>숭용차, LCD 모니터, 캠코더, TV 카메라, 오디오엠프, 폴리스티렌,</u> <u>금속절삭가공기계, 이어폰, 애폭시수지, 칼라 TV</u> 등은 실질교역이 크게 증진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간단히 언급
- □ 전체 양허표 공개 전까지는 개별 품목별로 관련 업계 문의에 가능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며,
  - o 협상결과를 궁금해 하는 산업계를 위해 11.12(수) 자동차·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별 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개별 품목별 양허 내용 문의시 산업부 담당 품목과 (또는 FTA 상품과)에서 상세 안내할 것입니다.

### 7 자동차가 초민감품목에 배치된 배경은?

- □ 자동차의 경우, 우리 업계의 현지화 전략과 함께 중국 현지 생산 외국산 자동차 수입 급증에 대한 국내적 우려를 감안 하였습니다.
- □ 우리는 협상과정에서 중측에 지속적으로 자동차 시장의 상호 개방을 요청하였으나, 중측이 강경한 개방 불가 입장을 고수 하였는바,
  - 우리 자동차 시장만 중측에 일방적으로 개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자동차 품목이 초민감 품목군에 잔류하게 되었습니다.

# 한중 FTA 체결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8

- □ 한-중 FTA는 생산품목, 품목별 경쟁력, 판매형태 등 수많은 요인에 의해 개별 중소기업에 대해 상이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나,
  - o △수출 중소기업과 중국진출 중소기업은 관세인하와 비관세 장벽 개선, 투자환경 개선 등으로 기회요인이 클 것이나, △ 내수 중소기업은 중저가 제품 유입으로 위협 요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중국의 내수시장이 확대되고 최종소비재에 대해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감안하면, 차별화된 브랜드와 기술력, 유통망 확보 등을 통해 중국 시장진출을 준비한다면 중소기업에게도 위협보다는 기회요인이 큰 것으로 평가됩니다.
  - o 업종별로는 전자, 기계, 화학 등 대중국 경쟁 우위를 갖는 업종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 o 일반적으로 의류, 생활용품 등 노동집약적 산업은 피해가 예상되나, 한·중 FTA를 통해 중국시장이 한국에만 특혜적으로 개방된 점을 감안, 기술력·디자인·브랜드·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우리 패션·생활용품·가공식품 등 분야의 기업들은 중국시장 진출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중국내 비관세장벽 해결책은?

9

- □ 한중 FTA에서는 다각적 방면에서 각종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들을 협정문에 다수 반영하였습니다.
  - o 우선 한.중 양국간 무역에 있어서 그간 우리 기업들의 애로 사항으로 작용해 온 비관세장벽 문제 해결을 위하여 ①양국 투자 기업 애로사항 해소 담당부서 지정, ②정부간 비관세조치 협의기구(작업반) 설치, ③비관세조치 관련 분쟁해결 신속해결 절차 도입 등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o 또한, 우리기업의 對中 수출 및 중국 진출시 예측가능성을 제고 하기 위하여 ① 신규·수정 수입허가조치 적용시 사전 공표 의무, ② 비관세조치 공표와 발효 전 유예기간 보장 의무 등 규정을 포함하였고,
  - o 특히, 우리기업들의 민원이 많았던 통관절차 분야에서는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① 700불 이하 물품 원산지증명서 면제, ② 48 시간 내 통관원칙, ③ 특송화물 서류 최소화 등 규정을 포함하였습니다.
  - o 한편, 중국 진출 우리 기업인들의 공통적 애로사항이었던 비자 문제 관련, 주재원 최초 2년 체류기간 부여 확대, 복수비자 발급 활성화 등 우리 수출기업 및 현지 진출기업이 피부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 10 우리 농수산물 보호가 충분히 가능한 수준인지?

- □ 중국과의 지리적 접근성, 생산 작물의 유사성 등을 감안, 우리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보호하였습니다.
  - o 전체 농수산물 중 품목수 기준 30%, 수입액 기준 60%를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수입액의 30%를 양허 제외 하는 등 기체결 FTA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내 농수산물 시장을 보호하였습니다.
    - ※ 한-중 FTA 농수산 자유화율은 품목수 기준 70%, 수입액 기준 40%로서 기체결 FTA 역대 최저 수준(10개국 평균 78.1%, 89%)
- □ 쌀, 양념 채소류(고추, 마늘, 양파 등), 육고기(쇠고기, 돼지고기 등), 과실류(사과, 감귤, 배 등), 수산물(조기, 갈치, 오징어 등) 등 국내 주요 생산 농수산물을 양허제외하여 FTA로 인한 시장 개방을 차단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 o (TRQ) 대중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 중 TRQ를 통해 국내 산업 보호 및 수급 안정을 기할 수 있는 품목 중에서 제한적 선정
    - ※ TRQ 품목: 대두, 참깨, 고구마전분, 팥, 보리, 냉동낙지 등 21개 품목
  - o (부분감축) 양허 제외 품목에 비해 국내적으로 상대적 민감성이 덜한 품목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한된 범위의 관세 감축을 통해 시장 개방으로 인한 충격 완화
    - ※ 부분감축 품목: 김치, 당면, 땅콩, 들깨, 냉동꽃게, 냉동복어 등 35개 품목

# 11 국내 농산물 보호 안전장치인 세이프가드 포함 여부?

- □ 한-미, 한-EU 등 기체결 FTA에서 도입된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FTA로 인해 관세철폐된 품목에 대한 보호 장치로서 도입된 것으로,
  - o 한-미 또는 한-EU FTA에서 고추, 양파, 마늘, 사과 등에 적용되는 농산물 세이프가드는 일정 기준 이상으로 수입이 급증할경우에 FTA 발효 전 기존 관세까지 인상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 □ 한-중 FTA에서는 상기 품목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 생산 농산물이 양허제외 대상 품목으로서 기존 관세율이 유지되는바, 별도의 농산물 세이프가드 규정 도입의 필요성은 없으며,
  - o 상품 협정 내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로 대응 가능

#### 12 | 농업분야 상품협상의 주요 결과 및 성과는?

- □ 전체 농산물(1,611개) 중 **일반품목 36.6**%(589개), **민감품목 27.4**% (441개), **초민감품목 36.1**%(581개)로 합의<sup>\*</sup>하고
  - \* (일반) 10년내 철폐, (민감) 10년 초과 20년 이내 철폐, (초민감) 관세 완전철폐 예외 인정
  - o 민감품목 및 초민감품목 비중이 63.4%(1,022개)로 기체결 FTA의 평균인 36.3%를 훨씬 상회하여
  - o 전체 농산물의 1/3 수준인 548개 품목을 양허제외로 확보, 주요 생산품목 보호가 가능하여 우리 농업에 미치는 영향 최소화하 였습니다.

< 농림업 생산액 상위 30대 품목 협상 결과 >

1~10위	미곡	돼지	한우	닭	우유	고추	계란	약용작물	딸기	인삼
11~20위	오리	수박	사과	토마토	배추	감귤	콩	마늘	고구마	참외
21~30위	포도	오이	무	떫은감	꿀	산나물	양파	단감	풋고추	산딸기

- 주1) 은 모든 관련품목 양허제외, 은 국내 영향이 적은 품목을 제외하고 양허제외
- 주2) 축산물은 번식용 가축, 채소·과일은 기공식품,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철폐기간 장기화
- o 그 밖에 부분감축\*, TRQ 제공\*\* 등을 통해 국내 수급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 부분감축(26개) : 김치, 당면, 땅콩, 들깨, 옥수수(종자용) 등
  - \*\* TRQ(7개): 대두, 참깨, 고구마전분, 팥(건조/기타), 기타사료, 보리(맥아)

### 13 김치의 대중국 시장 진출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 □ 한·중 정상회담(7.3) 합의에 따라 식약처 등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중국측과 김치 위생기준 문제 조기 해결을 위해 협의중이며,
  - o 농식품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는 김치 업계 및 전문가 등과 사전 협의를 거쳐 한중 김치 위생기준 실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농식품부에서는 김치 업계, 전문가 등 협의회(7.22, 9.15)를 개최하고, 동 논의 결과를 식약처에 전달하였습니다.
    - \* 중국의 김치 생산·유통실태 및 수출확대 방안 조사(9~12월) / 업계 현장조사(12월) 추진(aT)
  - o 식약처 주관으로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시 김치 위생기준 논의가 있을 예정이며, 농식품부도 참여 예정입니다(11월 이후 예정).
- □ 농식품부는 김치 위생기준 협상과 병행하여 중국 김치시장 개방에 대비한 중국 시장 조사 등 김치 수출준비 중입니다.
- □ 한편, 한중 FTA 발효 후 중국측은 김치에 대하여 20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게 됩니다
  - o 반면, 우리측은 김치가 부분감축 대상(초민감품목)이며, 기존 관세 20%의 1%를 감축(20% → 19.8%)

- 14 한·중 FTA를 통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산 분야는?
- □ (수출증진) 중국측 수산물 자유화율이 품목수 기준 99%, 수입액 기준 100%로 완전 개방되어 앞으로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이 제고 되었습니다.
  - \* 수산물 교역규모('10~'12년 평균)는 787백만불 적자(수출 356, 수입 1,143), 중측 수산물 기본관세 평균 10%
  - o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62개 주요 對중 수출품목 대부분이 관세 **즉시 철폐** 또는 **10년 내 철폐**로 조기 개방될 것입니다.
    - \* '12년 수출 현황: 어란(46백만불), 오징어(40), 명태(34), 김(31), 넙치(20) 등
  - 기체결 FTA와 비교할 때, 한-중 FTA 수산물 분야 협 상 결과는 어떠한지?
- □ 1단계 모델리티 협상을 통해 민감성 보호를 위한 충분한 초 민감품목군을 확보하고, 2단계 협상을 통해 불법어업 및 수산물 민감성 강조로 협상력을 제고하였으며
  - o 이에 주요 수입 품목의 대부분(수입액 64%)이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되어 한-미/한-EU 등 기체결 FTA에 비해 가장 보수적 양허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 한-미 FTA: 99.3%/100%, 한-EU FTA: 99.3%/99.3% 자유화 (품목수/수입액)

## [ 상품 관련 규범 분야 ]

16 원산지 결정기준(PSR) 관련 최종협상 결과는?

- □ 중국측이 협상 초기 광범위한 품목에 대해 엄격한 품목별 원산지 기준(PSR)\*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 o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 중측이 제안한 1,010개 세번에 대한 결합기준(세번변경기준 + 부가가치기준)을 47개로 축소하였습니다.
- □ 이에 따라, 농수산물의 경우 신선농수산물은 완전생산기준, 가공농수산물은 세번변경기준 중심으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공산품의 경우 업계 활용 편의를 위해 전반적 으로 세번변경기준으로 합의하고, 일부 품목의 경우 부가가치 기준을 도입하였습니다.

한·중 FTA를 통해 중국의 원산지/통관 절차나 소요 시간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 □ 한-중 FTA 원산지/통관 및 무역원활화 협정문에서 **원산지/통관** 절차의 신속·간소화 및 중국의 일관적인 세관행정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들을 명시하였습니다.
  - o 특혜관세 신청절차를 간소화하여, 미화 700불 이하 물품에 대해서는 원산지 증명서 제출의무를 면제하고, 수입시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특혜관세 사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o 일관성 조항 반영에 따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중국 내지 지역세관의 비일관적 집행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o '48시간 내 통관' 원칙을 명시하였으며, 특별히 규제되는 물품 외에는 보세창고 반입 없이 반출이 가능하여 비용 및 시간 절감할 수 있으며,
  - o 전자적 서류제출을 통한 사전 수입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물품 도착 즉시 반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또한 세관간 협의 및 관세위원회를 통한 이행 점검,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향후 협정 이행상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18 개성공단 관련 사항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

- □ 한-중 FTA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을 포함키로 한 '12.5월 한-중 통상장관간 공동성명\*에 따라 양측은 한반도 역외가공 문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 양 장관은 한중 FTA에 양국이 지정하는 역외가공지역(OPZ) 문제와 관련한 적절한 조항이 포함될 것이라는 점을 확인함
- □ 장관 간 공동선언문 합의 사항에 따라 양측은 협정 발효와 함께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서 생산되어 수출되는 제품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인정하기로 합의하고, 개성공단이 한반도 역외가공지역에 해당된다는 점에 대해 이해를 같이했습니다.
  - ※ 동 합의에 따라 **개성공단에서 생산되어 중국에 수출된 제품**은 **협정 발효시** 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 상기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적 사항 및 세부 문안은 양측이 현재 조정중에 있습니다.

# [서비스 및 투자 분야]

서비스·투자 분야는 네거티브 방식의 후속협상을 진행 하기로 약속하셨다고 하는데, 그 의의는?

- □ 중국은 기체결 FTA 서비스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한 적이 없고, 투자 분야에서 투자자유화 요소를 포함시킨 FTA나 BIT를 체결한 경험이 없습니다.
  - o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중국이 FTA에서 최초로 네거티브 방식에 따른 서비스·투자 자유화를 약속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 □ 중국은 국내법 정비,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지정 등을 통해 네거티브 방식을 채택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 중\*인 바,
  - \* 중국은 네거티브 방식에 따른 중-미 투자협정(BIT)를 추진중이며, 2014년 내 협정문 협상 및 2015년 이후 유보 협상 진행 예정
  - o 금번 협상 타결 후에도 중국측 동향을 지속 파악하여, 향후 후속 협상을 통해 최대한 자유화 수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20 서비스 시장개방 수준은?

- □ 한중 FTA 서비스 분야에서 양측은 모두 DDA 수정양허안 플러스 수준으로 개방하였으며, 특히 법률, 건축·엔지니어링, 유통, 건설, 환경,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경우 우리 기업들에게 의미 있는 개방성과를 도출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 o 법률서비스의 경우 상하이자유무역지구에 설립된 우리나라 로펌의 대표사무소가 중국측과 제휴하여 중국 전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o 또한 건축, 엔지니어링, 건설 분야에서 중국에 설립된 우리 기업들은 중국이외의 지역에서 달성된 실적을 인정받지 못해 기본 면허 등급 확보만이 가능하여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으나,
      - 한중 FTA를 통해 우리 관련 기업들의 면허 등급이 상향 조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중국측	주요	DDA	추가	양허	분야	>
------	----	-----	----	----	----	---

분 야	반 영 내 용
법률	▶ 중국내 대표사무소를 설립한 한국 로펌의 중국 로펌과의 제휴 허용(상하이 자유무역지구에 한정)
건 <i>축/</i> 엔지니어링	▶ 중국내 설립된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 인정
유통	▶ 중국내 30개 이상 점포를 가진 한국 유통기업의 책 판매 허용
건설	▶ 중국내 설립된 한국 기업 면허 등급 판정시 한국 등 여타 국가에서 달성된 실적 인정
환경	▶하수처리 서비스 등 5개 분야에서 순 한국기업 설립 허용
엔터테인먼트	▶49% 지분 한국기업 허용

□ 향후 네거티브 방식 후속협상을 통해 서비스 시장의 추가 개방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21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장치가 서비스 협상에 포함되었는지?

- □ 서비스 챕터 부속서로 영화 및 TV 드라마(방송용 애니메이션 포함) 공동제작을 포함시켰습니다.
  - o 한중 양국의 제작자가 영화를 공동으로 제작하는 경우 공동제작 영화에 대해 국내 영화에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이 부여 되도록 함으로써,
    - 양국간 영화 공동 제작 활성화 및 문화교류 확대가 더욱 촉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o TV드라마,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제작물에 대해 국내제작물과 동일한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built-in 조항)을 포함하여,
    - 향후 양국 제작자에 의한 TV드라마, 방송용 애니메이션 공동 제작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 또한 중국측의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분야가 개방되어 한류의 지속적 확산을 위한 기반이 구축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 22 자연인의 이동 분야의 전반적인 협상 성과는 무엇인지?

- □ 상용 방문자,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 체류 관련 요건 및 체류기간을 명시함으로써,
  - o 상품·서비스 교역 및 투자 관련 양국 기업인의 이동 활성화를 보장하였습니다.
- □ 또한 비자 원활화 부속서를 신설함으로써, 양국간 비자 애로 관련 아래 사항을 약속하였습니다.
  - ① 기업내 전근자 및 투자자의 최초 체류기간 2년\* 확대
    - \* 중국은 우리 기업내 전근자 및 투자자에게 대부분 최초 1년 단위의 취업 허가 및 체류 허가를 부여하여 기업내 전근자 등이 매년 이를 갱신해야 하는 어려움을 호소
  - ② 취업 거주 허가(중국), 외국인 등록증(한국) 연장 절차 원활화
  - ③ 상용 방문자에 대한 복수 비자 발급 확대
- □ 향후 투자 및 인력이동 확대 방안 협의조항을 포함함으로써,
  - o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양국간 상호 투자와 인력이동을 장려하기 위한 방안을 양국 담당 부서가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23 금융분야의 협상성과는 무엇인지?

- □ 한중 FTA에서는 금융 서비스의 특성을 반영, 금융 별도 챕터 구성에 합의하였습니다(중국 최초).
  - \* 중국은 기체결 FTA에서 금융을 부속서나 협정문내 일부 섹션으로 구성
  - o 금융 관련 규정 사전 공표, 이해당사자 의견 수렴, 금융 인허가 절차 신속 처리를 내용으로 하는 금융 투명성 제고 규정이 포함되었고
  - o 금융 관련 ISD 제기시 금융 건전성 조치 여부 확인을 위한 금융 당국간 사전 협의 근거 조항도 명시하였습니다.
- □ 아울러, 금융 서비스 위원회 설치를 통해, 금융 당국간 협의 채널을 확보 하였습니다.
  - o 금융 챕터 이행 상황 점검 및 금융 챕터 관련 이슈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 □ 향후 금융 분야 네거티브 후속협상 조항(협정 발효후 2년내 개시)을 포함함으로써, 설립전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 금융 서비스 자유화 및 강화된 투자 보호 효과가 기대됩니다.

# 24 통신분야 협상성과는 무엇인지?

- □ 한중 FTA 통신 챕터 협정문에 통신 분야 투명한 경쟁 보장 장치를 포함한 것이 가장 큰 성과입니다.
  - \* 상대국 사업자의 서비스 공급에 있어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공중통신망 및 서비스에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 포함
- □ 아울러 중국 진출 국내업계 애로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중국내 통신규제 관련 무역장벽을 완화함으로써, 통신 분야 규제환경의 비차별성, 투명성, 예측가능성 증대가 기대됩니다.
- □ 한-중 FTA 통신챕터는 중국 FTA 역사상 최초로 통신 분야 별도 챕터 구성에 합의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통신 분야는 물론 여타 서비스 분야 동반성장 및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 통신서비스는 그 자체가 서비스 교역활동이면서 동시에 경제활동의 토대가 되는 수단

#### [규범 및 협력 분야]

#### 25 경쟁 챕터의 의의와 주요 내용은?

- □ 한-중 FTA 경쟁챕터는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협력을 통해 FTA 체결 효과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 o 경쟁법 집행의 일반원칙\*,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적용, 경쟁 당국간 협력 등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 \* 중국이 경쟁 챕터에서 절차적 공정성, 투명성, 비차별원칙 등 실체적 내용을 포함한 것은 한-중 FTA가 최초임
- □ 경쟁 챕터를 통해 중국 경쟁당국의 반독점행위 조사시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인 법 집행을 방지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 o 우리 기업 처벌시 내국기업과 차별할 수 없으며(비차별), 그 과정을 투명하게 처리해야 하고(투명성),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절차적 공정성)를 보장하였습니다.
  - o 공기업에 대한 경쟁법 준수 의무를 도입하여, 중국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공기업과 우리 기업간 공정한 경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o 또한, 경쟁당국간 구체적인 협력 의무를 규정하여 최근 증가하고 있는 국제카르텔, 초국경적 M&A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26 지재권 협상 주요 내용과 의의는?

- □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실체적 권리 보호를 WTO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협정(TRIPS)보다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민사·형사 집행을 강화하는 내용의 협정문에 합의하였습니다.
  - o 특히, 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를 강화하여 우리나라 방송사업자의 방송에 대한 보호기간을 중국내에서 50년으로 연장(기존 20년) 하는 등 한류 컨텐츠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 o 상표권 제도를 개선, 소위 '짝퉁' 상표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고 침해시에도 효과적으로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 한중 FTA의 지재권 협정문은 중국이 기 체결한 어느 FTA 보다 상세하고 강화된 규정을 담고 있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7

저작권의 경우 한미FTA와 한·EU FTA는 사후 70년간 보장하도록 했지만, 한중 FTA는 50년으로 체결했고 의료·제약관련 특허는 특허심사기간을 제외한 20년으로 한정했다고하는데?

- ① (저작권보호기간) 중국은 자국내 여건 미성숙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기간을 현행대로 50년을 유지하는 대신,
  - o 방송사업자의 배타적 권리(방송신호의 복제, 전송에 대한 방송 사업자의 사전 허락권)를 보장하는 우리측 안에 합의하였습니다.
  - o 참고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와 관련하여, 중국을 지식 재산 보호가 가장 발달한 국가(미국, EU)와 동등선상에서 비교 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 ② (의료·제약 특허) 의료·제약 관련 특허도 일반적인 특허와 동일하게 출원일로부터 20년간 보호되며(특허법 제88조), 이는 FTA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한중 FTA에서 의료·제약 관련 특허가 특허심사기간을 제외한 20년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28 전자상거래 분야의 전반적인 협상 결과는 무엇인지?

- □ 중국으로서는 최초로 FTA에서 전자상거래 챕터를 수용하였으며, 전자서명, 종이없는 무역, 개인정보보호 등 전자 상거래 촉진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 o 한·미 FTA 전자상거래 챕터와 비교시에도 디지털제품의 비차별 대우는 미포함 되었으나, 나머지 대부분의 조항은 유사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o 한·중 양국간 전자상거래 관련 이슈\*가 발생할 경우, 기존 부처별 양자채널이나, WTO 등 국제기구가 아닌 FTA 이행 위원회를 통해 FTA 차원의 이슈해결방안을 모색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 온라인 결제과정의 개인정보 유출, 전자서명 · 인증 관련 협력이슈 등

#### 29 한중 FTA 환경챕터의 목적과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 □ 환경 챕터의 일반적 목적 뿐 아니라, 중국 내의 환경오염이 우리나라의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특히 고려하여, 중국내 환경오염 저감 촉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o 일반적 목적은 ① 생산과정에서 정상적인 환경비용이 투입되어 양국 간 공정한 무역조건 유지, ② 생산 활동의 증대에 따른 환경오염 가중을 방지, ③ 지구촌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 환경챕터의 주요내용으로는,
  - o 환경보호 수준의 지속적 제고노력 의무, 다자환경협약의 준수, 환경법의 효과적 집행, 무역과 투자 증진을 위한 환경보호 수준의 저하 금지 등이며,
  - o 양자협력 및 환경위원회 설치 조항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 ※ 중국이 FTA에서 환경분야 독립챕터를 포함한 것은 중-스위스 FTA를 제외하면 한-중 FTA가 유일하며, 구제척인 의무사항들을 규정하고 환경위원회를 설치한 것은 한-중 FTA가 최초

#### 30 경제협력분야의 전반적인 성과는?

- □ 양국의 관심분야(농업, 어업, 임업, 철강, 중소기업, 정보통신기술, 섬유, 정부조달, 에너지자원, 과학기술, 해양운송, 관광, 문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지방협력 등)에 대한 다양한 협력활동 및 양국간 경제협력위원회 설치에 합의하여, 양국 간 세부 분야별 협력강화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 o 양국 기체결 FTA 중 가장 많은 분야에서, 가장 상세하게 규정하여, 가장 폭넓고 구체적인 경제협력챕터로 평가됩니다.
- □ 특히 중국이 직접적으로 서비스·투자 관련 시장 개방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우리측 관심 분야(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방송등)에 대해 일단 경제협력챕터에 포함하여 향후 시장개방을 위한 논의의 기틀을 마련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 □ 또한, 중소기업, 특히 영세상인 보호 필요성을 감안하여,
  - o 경제협력 챕터의 중소기업 협력 규정에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 구체적으로, ▲ 중소기업 발전에 우호적 환경조성, ▲ 기존 협력채널 (중기청간) 포함, 중소기업 관련 민관협력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영세기업 포함) 경쟁력 제고 및 영세기업 관련 정보 교환, ▲ 중소기업 교육훈련 증진, 경험공유, ▲ 경제협력위원회 설치를 통한 중소기업 논의의 정례화 등을 규정

#### 31 정부조달 챕터는 왜 포함되지 않았는지?

- □ 한-중 FTA에 정부조달챕터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경제협력의 일부 분야로 포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o 중국은 아직 WTO 정부조달협정(GPA: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회원국이 아닌 관계로, 그간 WTO GPA 가입 협상이 끝날 때까지는 FTA 차원에서의 관련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으며 (중국의 일관된 정책),
    - 중국의 기체결 FTA 중 정부조달을 규정한 것은 중-스위스 FTA가 유일하며, 한-중 FTA에서의 정부조달 문안은 중-스위스 FTA 수준 이상으로 합의하였습니다.
  - o 정부조달 구체적 의무 사항 및 양허안을 규정하지 않는 대신, 중국이 GPA 가입시 정부조달챕터를 위한 협상을 시작하도록 하는 추후 협상 조항을 규정하여, 추후 한중 FTA에 정부조달 챕터를 포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